2019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현안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보고서

연구수행기관 법무법인(유한) 세종
연구책임자 변호사 임 상 혁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9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현안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보고서

연구수행기관 법무법인(유한) 세종
연구책임자 변호사 임 상 혁

제 출 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 위원회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본 보고서를
“2019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현안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 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연구수행기관 : 법무법인(유한) 세종
연 구 책 임 자 : 임상혁(변호사)
참 여 연 구 원 : 송재섭(변호사)
문진구(변호사)
황지원(변호사)
김소리(변호사)
박민영(미국변호사)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배경 ····· 2

제2절 연구 범위 ····· 4

제3절 연구 방법 ····· 4

제4절 연구 경과 ····· 6

제2장 미국과 EU의 저작권 통상 관련 보고서 분석 ····· 8

제1절 분석의 이유 및 범위 ····· 8

제2절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 8

1. 배경 ····· 8

2. 법적 근거 ····· 9

3. 절차 ····· 10

4. 내용 ····· 18

5. 효과 ····· 21

제3절 미국의 NTE 보고서 ····· 21

1. 배경 ····· 21

2. 법적 근거 ····· 22

3. 절차 ····· 22

4. 내용 ····· 25

5. 효과 ····· 27

제4절 미국의 Notorious Markets 보고서 ····· 28

1. 배경 ····· 28
2. 법적 근거 ····· 28
3. 절차 ····· 29
4. 내용 ····· 33
5. 효과 ····· 35
제5절 EU의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 ····· 36
1. 배경 ····· 36
2. 법적 근거 ····· 36
3. 절차 ····· 37
4. 내용 ····· 39
5. 효과 ····· 42
제6절 시사점 ····· 42

제3장 중국, 베트남, 태국 관련 저작권통상 현안 조사 및 해결 방안 ····· 44
제1절 조사 절차 개관 ····· 44
1. 업체별 설문조사 진행 ····· 44
2. 업체별 심층 면담 진행 ····· 47
제2절 업체 설문 분석 ····· 48
1. 콘텐츠 수출 개시 및 협상 단계 관련 설문 분석 ····· 48
2.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내용과 이유에 관한 설문 분석 ····· 51
3.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관련 설문 분석 ····· 54
4. 저작권 법제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 관련 설문 응답 분석 ····· 58
5. 분야별 설문 응답 분석 ····· 59
6. 설문지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 60
제3절 저작권통상 현안의 해결 방안 관련 검토 ····· 64

1. 서론 ····· 64
2. 국가 간 FTA 및 국제조약 적용 실질화 ····· 66
3. 저작권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지원 확대 ····· 85
4. 현행 저작권 수출 관련 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 91

제4장 정부의 저작권통상 현안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언 ····· 99

제1절 개관 ····· 99

제2절 보고서 작성 주체 ····· 100

제3절 보고서 작성 대상 ····· 101

1. 대상 국가 ····· 101
2. 대상 시장(market) ····· 103
3. 대상 권리 - 저작권, 그 외 지식재산권 ····· 104
4. 대상 분야 ····· 105

제4절 보고서 작성 절차 ····· 105

1. 발행 주기 ····· 105
2. 사전 준비 – 온라인 설문 양식의 작성 ····· 106
3. 의견 수렴 공지 및 의견 취합 ····· 108
4. 대면 의견 수렴 절차 - 공청회 ····· 109
5. 그 외의 의견 수렴 절차 ····· 111
6. 보고서 작성 및 발표 ····· 112

제5절 보고서 내용 ····· 112

제6절 보고서 활용 방안 ····· 113

부록 ····· 114

1. 설문지(중국) ····· 114

2. 설문지(베트남) ····· 127
3. 설문지(태국) ····· 140
4. 설문지 수정안 ····· 153

참고문헌 ····· 161

1. 국내 문헌 ····· 161
2. 외국 문헌 ····· 162

요약문

2019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현안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보고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업체나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수출 국가 내에서의 자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현황이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업체나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통상현안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통상에 적절히 활용하여 제3국에서 발생하는 자국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콘텐츠 수출에 대한 통상현안 파악이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에서도 콘텐츠 수출업체 및 관련 협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저작권통상 현안 및 저작권 관련 문제점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을 구축하여 자국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 가능한 저작권통상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통상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먼저, 대표적인 해외 저작권통상보고서인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NTE 보고서, Notorious markets 보고서, EU의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를 대상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실제 저작권통상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업체

들과의 심층 면담, 설문조사 등을 직접 시행하여 중국, 베트남, 태국 3개국을 중심으로, 국내 업체가 방송,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통상현안, 관련 문제점, 업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파악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국가 간 FTA 및 국제조약의 실질화 방안, 저작권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지원 확대 방안, 현행 저작권 수출 관련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각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정부 차원의 저작권통상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안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권통상보고서의 체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Abstract

Research Report on Analysis of Current Trade Issues and Study of Solutions Relating to Copyright Export(2019)

Many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E.U., actively engage in building networks with contents companies and associations and systemically investigate the status and situation of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the copyrights of their local contents in foreign countries. Further, based on meetings, surveys and interviews with these companies and associations, they prepare and publish reports containing current trade issues, problems and proposed solutions in connection with export of copyrights of their local contents in foreign countries. These reports are used to protect and enforce copyrights of their local contents in foreig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Korea does not have an established system to identify current trade issues relating to the export of contents and to develop countermeasures to such issues even though its cultural contents are being exported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Asian countries, European countries and South America. Naturally, there is a growing need in Korea for publishing a copyright trade report that can be used to shed light on any copyright-related issues of the export of

Korean contents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will enable the building of networks with contents export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identification of current trade issues and problems relating to copyrights, and development of appropriate government-driven countermeasures.

To that end, this report analyzes the Special 301 Report, th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and the Notorious Markets Report of the U.S. and also E.U.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are periodically published in the field of copyright trades. Then, this report explains the result of interviews and surveys with interested parties in Korea, which export their contents to China, Vietnam and Thailand,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s to the current practices and trade issues, related obstacles, and their needs of companies, in relation to the export of Korean TV shows, movies, music, characters, books, webtoons and game contents to these countries. Next, as proposed solutions to the problems identified above, this report discusses suggestions to enforce the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to expand supports and communications between copyright-related organizations, and to improve the current support system regarding the export of copyrights. Lastly, this report concludes by proposing a proces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 use to prepare a copyright trade report in the future and the contents to be included therei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연구의 목적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콘텐츠 수출에 대한 통상현안 파악이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업체나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수출 국가 내에서의 자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현황이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업체나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통상현안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통상에 적절히 활용하여 제3국에서 발생하는 자국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콘텐츠 수출업체 및 관련 협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저작권통상 현안 및 저작권 관련 문제점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 가능한 저작권통상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콘텐츠 수출 현황이나 콘텐츠 수출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본 보고서는 (1)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통상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해외 저작권통상보고서들의 형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2) 실제 저작권통상에 관여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심층 면담, 설문조사 등을 직접 시행한 후 저작권통상 현안, 관련 문제점, 업체들의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였으며, (3) 이를 바탕으로 추후 정부 차원의 저작권통상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내용에 대

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가. 콘텐츠 시장의 글로벌화 경향

전세계적으로 문화서비스 분야의 수요 증가, 네트워크의 활성화, 콘텐츠 수출에 대한 국가 간 협상 진전에 따라 콘텐츠 시장의 글로벌화 경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수출액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17년도 대비 8.8% 증가한 7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며, 2019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18년도 대비 8.5% 성장한 81.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한국 콘텐츠 수출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뿐 아니라 북미, 유럽 그리고 남미까지 확장되는 등 그 수출 국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 콘텐츠 역시 드라마나 음악뿐 아니라 웹툰, 게임, 캐릭터 등으로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나. 수출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 구축의 필요성

이와 같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 대상 국가에서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접 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의 경우,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 표절, 저작권료 미지급 등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콘텐츠 수출 업체들이 겪고 있

1)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2018년 결산 및 2019년 전망(2019), 6면 및 79면.

는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거나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 저작권통상보고서 마련의 필요성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이하 'NTE 보고서')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미국인의 직접투자에 상당한 장벽이 되거나 이를 왜곡하여 공정무역 경쟁을 저해하는 각 대상 국가의 법률·규정·정책·관행을 분석하고, 이러한 법률 등에 의한 무역왜곡효과를 평가하여, 추후 무역장벽이나 무역을 왜곡하는 법률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와의 협상 또는 협의 등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유럽집행위원회의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는 콘텐츠 수출업체나 여러 저작권 관련 협단체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EU 회원국의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각국을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와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비즈니스 전략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담은 보고서이다.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콘텐츠 수출에 있어서의 저작권 관련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업체 개별적인 대응책이나 지원을 넘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에서도 콘텐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 및 협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에 있어서의 저작권 관련 문제, 관련 법제도 구비 여부, 지원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모듈 마련을 통한 저작권통상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2절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미국과 EU의 저작권통상 관련 보고서 분석

- 미국의 NTE 보고서와 스페셜 301조 보고서 분석
- 미국의 Notorious Market 보고서 분석
- 유럽집행위원회의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분석

나. 중국, 베트남, 태국 관련 저작권통상 현안 조사 및 해결 방안 도출

- 콘텐츠 분야별 수출업체들의 의견 수렴
- 저작권통상 현안에서의 문제점 분석
- 저작권통상 현안의 해결 방안 모색

다. 정부의 저작권통상 현안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언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가. 해외 저작권통상 관련 보고서 분석

- 미국의 NTE 보고서, Notorious market 보고서, 유럽집행위원회의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

외 저작권통상보고서의 배경, 작성 절차, 내용, 효과 등을 조사

- 추후 정부의 저작권통상 현안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나. 저작권통상 현안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및 검증회의체 회의 개최

- 중국, 베트남, 태국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를 7개의 분야(방송, 영화, 음악, 웹툰, 출판, 캐릭터, 게임)로 나누어 저작권통상 현안에 관한 설문지 작성
- 검증회의체 회의를 진행하여 설문지의 문제점 및 추후 개선 방향 모색
- 설문 응답 분석을 통해 저작권통상 현안 및 업체들의 요구 사항 파악

다. 중국, 베트남, 태국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들과의 심층 인터뷰 진행

- 중국, 베트남, 태국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저작권통상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라. 중국, 베트남, 태국의 저작권 관련 법제, FTA 조항 및 현행 지원 제도 검토

- 중국, 베트남, 태국의 저작권 관련 법제 및 관련 FTA 조항 검토
- 중국, 베트남, 태국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현행 지원 제도 분석

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의 자문회의 개최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료 징수 관련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

음반산업협회)와의 자문회의 개최

제4절 연구 경과

가. 착수보고

- 개최일 : 2019. 7. 24.(수)
- 주요 내용 : 연구 범위와 방법 및 향후 일정 협의

나. 보고서 점검 회의

- 개최일 : 2019. 8. 14.(수)
- 주요 내용 : 연구의 진행 방향, 미국 스페셜 301조 내용 및 시사점 분석, 연구추진방법 및 전략, 보고서 기본 목차 등에 대해 보고

다. 1차 설문지 작성 및 설문지 수정을 위한 업체별 인터뷰 진행

- 개최일 : 2019. 8. 22.(목)
- 참석자 : GMCP, 아시아홈엔터테인먼트, 탭스토리, SBS콘텐츠허브 등
- 주요 내용 : 저작권통상 현안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설문지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피드백 청취

라. 설문지 수정을 위한 검증회의체 회의 진행

- 개최일 : 2019. 9. 9.(월)
- 참석자 : SP 통계연구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리서치 앤 리서치, 한국저

작권위원회

- 주요 내용 : 설문지에 대한 피드백 및 수정 방향 논의

마. 설문조사 및 설문 응답 취합

- 기간 : 2019. 9. 16.(월) ~ 2019. 11. 7.(목)
- 주요 내용 : 업체별 설문조사 진행 및 설문 응답 취합

바. 업체별 심층 인터뷰 진행

- 기간 : 2019. 9. 17.(화) ~ 2019. 10. 2.(수) (총 8회 진행)
- 주요 내용 : 중국, 베트남, 태국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들에 대해 분야별 심층 인터뷰 진행

사. 중간점검회의 진행

- 기간 : 2019. 11. 1.(금)
- 주요 내용 : 연구 진행 경과 보고, 설문 및 업체별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보고, NTE 보고서 및 유럽집행위원회 IP 집행 및 보호 보고서 분석 결과 보고, 3국(중국, 베트남, 태국) 저작권 법제 분석 등 연구 결과 보고 및 추후 진행 방향 협의

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의 자문회의 진행

- 개최일 : 2019. 11. 14.(목)
- 주요 내용 : 음악저작물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자문회의 개최

제2장 미국과 EU의 저작권통상 관련 보고서 분석

제1절 분석의 이유 및 범위

급격한 인터넷 및 운·수송 시스템의 발전으로 국가 간 무역 및 교류가 용이해짐에 따라, 자국 지식재산권자들의 권리 및 이익 보호는 비단 자국의 법률 체계와 집행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가 수출되는 제3국의 법률 체계 및 집행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통상 환경하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권과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발행한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민간부문에도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미국과 EU의 대표적인 저작권통상 관련 보고서들을 소개하고, 각 보고서를 준비하는 절차, 정보 수집 방법, 정보 수집 대상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발표된 각 보고서들의 내용을 저작권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절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1. 배경

이른바 ‘스페셜 301조’로 알려진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82조

에 따라,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2]는 1989년부터 매년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에 대하여 조사·평가하고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한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인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행해 오고 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비하고 지식재산권 시장접근이 곤란하여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Country, PWC)'으로, 지식재산권의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를 '감시대상국(Watch Country, WC)'으로 분류 및 선정한다. 또한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지식재산권자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 국가로서 미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PFC)'으로 지정한다. 스페셜 301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추가 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무역보복조치(retaliation)가 가능한 반면,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은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적 근거

흔히 '불공정 무역조항'으로 일컫는 '일반 301조'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 내지 제309조[3]의 9개 조항을 포괄하여 부르는 명칭으로서,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때문에 피해를 볼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 301조의 기본적인 내용은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52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74년 무역법이 제정되면서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가 강화

2)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 정책을 권고하는 책임을 갖는 장관급 정부기관으로, 양자 간 혹은 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유관기관인 무역정책실무협의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 TPSC)와 무역정책검토그룹(Trade Policy Review Group, TPRG)을 통해 무역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19 U.S.C. §§2411-2419. Actions by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et al.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제정을 통해 추가된 1974년 무역법 제310조는 소위 '수퍼 301조(Super 301)'[4]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수퍼 301조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의 청원을 받아들여 3년 내에 해당 국가에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스페셜 301조[5]는 수퍼 301조와 함께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 제정에 따라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추가된 규정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 규정은 해외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스페셜 301조는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무역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외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 도입된 것인데, 일반 301조나 수퍼 301조의 적용으로 협상을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스페셜 301조를 제정한 이유는 지식재산권 분야가 미국의 비교우위 산업임을 확인하고 지식재산권의 강한 보호를 통해 무역상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6]

3. 절차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매년 3. 31.경 무역대표부의 NTE 보고서[7] 공개 후

4) 19 U.S.C. § 2420. Identification of trade expansion priorities.

5) 19 U.S.C. § 2242. Identification of countries that deny adequate protection, or market acces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6) 이유리나, 미국의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식재산동향 심층분석보고서(2019. 8.), 3면.

7) NTE 보고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절에서 살펴본다.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4월 말경에 발행되고 있다. 즉,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행 절차는 4월 말을 기점으로 보고서 준비 과정과 보고서 내용에 따른 후속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스페셜 301조 보고서 준비 절차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다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발행되는 결과물이다. 관련 법률에 의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NTE 보고서의 발행 후 30일 이내에 가장 장애가 되거나 정도가 심한 법률, 정책 또는 관행을 갖는 해외국가나 혹은 그러한 법률, 정책 또는 관행(most onerous or egregious acts, policies, or practices)에 의해 미국의 제품에 실질적으로나 잠재적으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국가들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8] 다만 1994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협정 이후, 특정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 가장 최근에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8) 19 U.S.C. § 2242. (a) In general. By no later than the date that is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nnual [NTE] report is submitted,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erein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identify-
(1) those foreign countries that-
(A) deny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B) deny fair and equitable market access to United States persons that rely up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2) those foreign countries identified under paragraph (1) that are determined by the Trade Representative to be priority foreign countries.
(b) Special rules for identifications
(1) In identifying priority foreign countries under subsection (a)(2),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only identify those foreign countries-
(A) that have the most onerous or egregious acts, policies, or practices that-
(i) deny adequate and effect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i) deny fair and equitable market access to the United States persons that rely up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우크라이나(2013-2014년)인데, 그 근거로서 미국 및 기타 권리자의 로열티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행정 시스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 사용 행태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장애가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9)]

스페셜 301조 이행 작업의 일환으로 무역대표부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국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으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또는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문제가 있는 국가를 포함하는 별도의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Priority Watch List)'와 '감시대상국 리스트(Watch List)'를 작성하여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발표하고 있다. 위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또는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 주목할 만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스페셜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1년 이상 이름을 올린 교역국에 대한 대책안(action plan)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은 일차적으로 연방관보의 공지를 통한 의견 수렴(public comments), 공청회(public hearing)를 통한 공공의견의 수집과, 이들 의견에 기반한 정부 관련 부서의 집중적인 논의(deliberation)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2019. 4. 25.에 공개된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 절차를 살펴보면, 무역대표부는 2018. 12. 28. 연방관보[10)]를 통해 일반 공중과 해외 정부로부터 각각 2019. 2. 7. 및 2. 21.까지 서면 의견, 공청회 진술서(hearing statement), 공청회 참석 의사 통지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2019. 2. 27. 열릴 공청회 일정을 공지하면서,[11)] 공청회에서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2019. 3. 5.까지 추가 서면 의견을

9) 2014 Special 301 Report. 31면.

10) 83 FR 67468-70.

11) 제출하는 의견에 업무상 기밀정보가 포함된 경우, 의견 제출자는 정보의 기밀성에 대해 증명(certify)하고 파일 제목 및 관련 페이지에 'BC' 및 'BUSINESS CONFIDENTIAL'를 적절히 표시한 뒤 제출할 수 있으며, 업무상 기밀정보를 삭제한 공개 버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당사자들은 연방규정 전자포털(www.regulations.gov)을 통해 의견 등을 제출하였다.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준비 및 발행 절차】

2018. 12. 28.	스페셜 301조 보고서 서면 의견 등 제출 공지
2019. 2. 7.	스페셜 301조 보고서 관련 일반 공중 서면 의견 등 제출 기한
2019. 2. 21.	스페셜 301조 보고서 관련 외국 정부 서면 의견 등 제출 기한
2019. 2. 27.	스페셜 301조 보고서 관련 공청회 개최
2019. 3. 5.	추가 서면 의견 제출 기한
2019. 3. 30.	NTE 보고서 공개
2019. 4. 25.	스페셜 301조 보고서 공개

한편 연방관보 공지 및 공청회 후 의견 수렴을 통해 총 약 89건의 서면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유럽의 시청각 불법 복제 방지 연맹(Audiovisual Anti-Piracy Alliance, AAPA)과 미국의 국제지식재산권 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을 비롯한 48개의 비정부 이해관계인과, 대한민국,[12]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25개의 외국 정부가 서면 의견을 제출하였다.[13]

2019년 공청회는 연방관보에 게시된 바와 같이 2019. 2. 27. 미국 워싱턴 DC의 무역대표부 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5개국의 정부 관계자와 약 20개의 비정부 이해관계인들이 무역정책실무협의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 TPSC)의 스페셜 301조 분과위원회(Special 301 Subcommittee)에 출

무역대표부는 업무상 기밀정보가 제외된 공개 버전을 연방규정 전자포털에 게시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그에 대해 반박 의견 혹은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Government of Korea, 2019 Special 301 Review Comment(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USTR-2018-0037-0075).

13) Docket No. USTR-2018-0037.

석하여, 10여 분간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관련한 무역대표부 검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14)]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관련 서면 의견 제출자 및 공청회 발언자】

서면 의견 제출	비정부 이해관계인	• AAFA • Abhilipsa Panda • Ane Kallmyr Lerheim • ACT | The App Association • Alliance for Fair Trade with India • AmCham Argentina • Asia Video Industry Association • Association for Accessible Medicines • Audiovisual Anti-Piracy Alliance • beIN Media Group, LLC & Miramax, LLC • 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 BSA • Canal+ Group •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 Consortium for Common Food Names • Emirates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 Global Tungsten & Powders • HBO Latin America • IACC • Indian Pharmaceutical Alliance •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 Internet Association •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 MFJ International, LLC •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National Confederation of Industry of Brazil • 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 • U.S. Dairy Export Council • NBA and USTA • NLP • PhRMA • PIJIP, American University • Priyanka Vyas • Public Citizen • Rail Security Alliance • Sky Limited • Sports Coalition • Trademark Working Group

14)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의 남복현 통상협력담당관이 참석하여 지식재산권과 공공보건의 관계, 한국의 약가 및 급여 정책,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등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Government of Korea, Post-hearing comments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USTR-2018-0037-0081)}.

		•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 FICCI • Footwear Distributors & Retailers of America • Fundacin IFARMA	• U.S. Chamber of Commerce • 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Forum • Ukrainian Bar Association • NALSAR Litigation Project
	외국 정부	• Argentina • Bolivia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Bulgaria • Colombia – Trade Office • Costa Rica – Ministry of Foreign Trade of Costa Rica • Czech Republic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Dominical Republic – 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MIPYMES • Ecuador • Egypt – Economic & Commercial Office • Guatemala – Intellectual Register of Property • Indonesia • Jamaica • Malaysia • Pakistan	• Panama – 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 Peru – The National Institute for the Defense of Free Competi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Philippines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 Republic of Korea • Saudi Arabia • Switzerland • Taiwan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Thailand • Turkey – Ministry of Trade of Republic of Turkey • Ukraine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 • United Arab Emirates
공청회 의견 개진	비정부 이해관계인	• ACT | The App Association • Alliance for Fair Trade with India • 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 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 BSA | The Software Alliance •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 Computer & Communications	•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 MFJ International, LLC •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NALSAR Litigation Project •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Industry Association • Consortium for Common Food Names • Footwear Distributors and Retailers of America	• Public Citizen • Trademark Working Group • U.S. Chamber of Commerce • 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Forum
	외국 정부	• Bolivia • Bulgaria • Indonesia	• Republic of Korea • Ukraine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조치는 이해당사자, 해외 정부 및 미국 의회와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 내 모든 관련 기관과 집중적인 논의(deliberation)를 하여 얻은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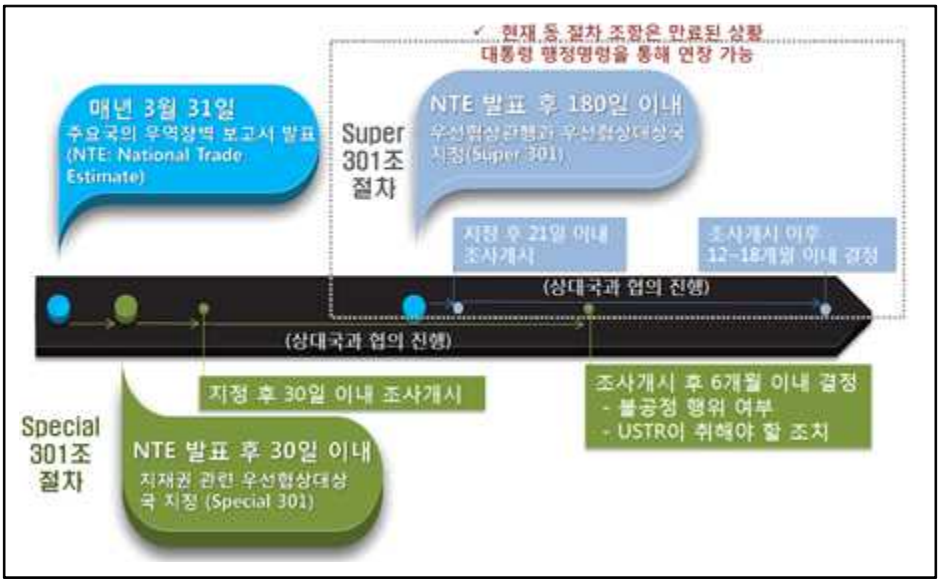
무역대표부는 관련 법률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산업적 영향을 미치는 관련 시장에의 접근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교역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수행하고, 스페셜 301조 분과위원회는 무역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위 평가를 기반으로 한 감시대상국 명단 선정을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각 교역국에 대한 개별 평가를 수행하되, 해당 국가의 개발 수준, 국제 의무 및 약속, 권리 보유자와 기타 이해 당사자의 우려 사항 및 미국의 무역·투자 정책을 고려한다.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경우, 스페셜 301조 분과위원회는 100여 개 이상의 교역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의 우선감시대상국과 브라질, 캐나다, 태국, 터키, 베트남 등 25개의 감시대상국을 선정하였다.

나. 스페셜 301조 보고서 후속 절차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역대표부는 NTE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 30일 이내

에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 보고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무역대표부는 조사 개시 후 약 6개월 간 협의를 거쳐 대상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 판단 및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과 같은 보복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 관련 절차】[15)]



이와 달리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은 스페셜 301조에 따른 의무 조사 및 보복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 후속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5) 설송이, 미국 무역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TA 통상 리포트 제18호(2018), 16면.

【스페셜 301조 보고서 후속 절차】

구분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 기준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국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미비, 시장접근 곤란 등으로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지식재산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
후속 절차	지정 후 3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 결정 ⬇ 조사 개시일에 상대국에 협의 요청 ⬇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 보복조치 발동 여부 결정	1년 이상 선정된 경우, 대책안 개발 필요	없음
법률상 보복조치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제한 등	없음	없음

4. 내용

가. 개요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1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고 25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중국,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신규),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크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신규), 페루, 루마니아, 스위스,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우리나라의 경우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처음 발행된 1989년부터 매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었으나, 2009년 처음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2019년까지 감시대상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 국가인 중국, 베트남, 태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나. 중국

중국은 우선감시대상국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8. 3.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을 대폭 변경하고 2019. 1. 최고인민법원 내 IP법원을 설립하는 등 중국 당국 차원에서 긍정적인 발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권리 보유자들은 여전히 지방 정부의 관리, 당의 관리 및 강력한 지역 이익의 개입으로 법원의 독립성과 법치의 독립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있는 구제수단 및 패널티, 스포츠 및 기타 생방송의 무단 전송 방지 방안, 그리고 행정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조사 및 기소하기 위한 기준을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 수준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형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여전히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저작권법과 관련한 개정 작업이 진척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상거래 시장이 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위조가 미국 권리 보유자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부 주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제품을 제거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형사 및 민사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을 하였지만,

권리 보유자는 여전히 비효율적인 게시중단 절차(take down procedure), 중소형 업체에 대한 늦은 대응 속도, 반복적인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가 불충분 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중국에서는 새로운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이 발효되었으나,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달리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 보유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 베트남

베트남은 2019년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온라인상의 무단복제(piracy) 및 위조품 판매가 여전히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자원(resource) 및 전문성(expertise) 등 전반적인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상당 부분을 행정적 집행절차에 의존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무단복제와 위조를 막는 데에는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라. 태국

태국은 2018년 미국과 태국 간의 무역 및 투자 프레임워크 계약(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체결로 인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전환된 후, 2019년에도 여전히 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총리 주재 위원회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여로, 부서 간 협업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더욱 효과적이고 억제력 있는 집행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지속적으로 취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술 보호조치 예외사항 및 무단 캠코더 촬영 금지에 대한 절차적 장애 개선 등 태국 저작권법의 개정이 촉구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널리 유통되는 위조품 및 무단복제품,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의 광범위한 라이선스 위반 소프트웨어의 사용, 오랜 시간 소요되는 민사적 지식재산권 집행 절차, 낮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콘텐츠 할당 제한 등의 지속적인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5. 효과

1988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1974년 무역법 제182조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에 따라 실제로 무역보복이 가해진 예는 거의 없으며, 위 조항들이 가지는 위력은 실제로 가해지는 무역보복이라기보다는 조사 및 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률적으로 무역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감시대상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무역대표부가 취하는 강화된 노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 통상분쟁 내지 통상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약 10년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미국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철강, 제약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강도 높은 통상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스페셜 301조에 따른 조사 몇 협의에 의한 통상압력과 별개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같은 양자 간 무역협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집행 현황이 협상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제3절 미국의 NTE 보고서

1. 배경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행 약 1달 전에 공개되는 NTE 보고서는 별도의 정보 및 의견 수집 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데, 미국의 지식재산권 등 재화와 용역의 수출, 개인과 기업의 직접해외투자,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s)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한편,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감시대상국 및 감시대상국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중

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2. 법적 근거

1984년 무역 및 관세법(Trade and Tariff Act of 1984) 제303조에 의해 추가되고,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제1304조,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 제311조 및 1998년 인터넷 면세법(The 1998 Internet Tax Freedom Act) 제1202조에 의해 개정된 1974년 무역법 제181조[16]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중요한 대외 무역 장벽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대통령과 상원 재무위원회 및 하원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법률은 농산물 및 지식재산권 등 재화와 용역의 수출,[17] 개인과 법인의 직접해외투자,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무역 장벽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성된 목록은 무역 장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협상을 촉진하며, 법률을 집행하고 법률 및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3. 절차

NTE 보고서는 무역대표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기타 정부 기관 및 대사관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연방관보 공지에 따라 일반 공중이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16) 19 U.S.C. § 2241. Estimates of Barriers to Market Access.

17) 미국인에 의하여 수출되었거나 실시허락된 상표,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다.

【2019-2020년 NTE 보고서 준비 및 발행 절차】

2018. 8. 24.	2019년 NTE 보고서 관련 서면 의견 등 제출 공지
2018. 10. 30.	2019년 NTE 보고서 관련 서면 의견 제출 기한
2019. 3. 30.	2019년 NTE 보고서 공개
2019. 9. 3.	2020년 NTE 보고서 관련 서면 의견 등 제출 공지
2019. 10. 31.	2020년 NTE 보고서 관련 서면 의견 제출 기한

무역대표부는 매년 8월 말 내지 9월 초에 연방관보 공지를 통해 NTE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10월 말경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 NTE 보고서는 직접해외투자 또는 전자상거래를 지나치게 방해하거나 국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을 제한·방지·방해하는 정부의 조치나 정책 등 외국의 무역 장벽을 아래와 같이 11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수입 정책[18)]
-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19)]
-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20)]
- 보조금-수출 보조금[21)] 및 현지 콘텐츠 보조금[22)]

18) 관세 및 기타 수입세, 정량적 제한, 수입 허가, 무역 촉진에 반하는 관세 장벽 및 결점, 기타 시장 접근 장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9) 통신 제품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차별적인 기술 규정 또는 기준 등과 같은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가 되는 기준, 적합성 평가 절차 또는 기술 규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를 통해 시행되는 무역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1) 제3국 시장에서 미국 수출을 대체하는 우대 조건에 따른 수출 자금 조달 및 농업수출 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2) 수입 제품이 아닌 국내 구매 또는 사용에 따른 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정부 조달[23)]
- 지식재산권 보호[24)]
- 서비스 장벽[25)]
- 디지털 거래 및 전자상거래 장벽[26)]
- 투자 장벽[27)]
- 경쟁[28)]
- 기타 장벽[29)]

특히 2018. 8. 24.자 연방관보[30)]는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유럽 연합, 일본, 우리나라,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상가포르,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를 NTE 보고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의 수출 시장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

23) 국산제품 구매 정책 및 비공개 입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4) 부적절한 지식재산권 체제 및 지식재산권의 부적절한 집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5) 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 금지 또는 제한, 차별적 라이선스 요건 또는 규제 기준, 현지 주둔(local-presence) 조건, 및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6) 데이터 현지화 요건, 디지털 제품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관행, 인터넷 지원 기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및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을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장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7) 외국 지분 참여 및 외국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에의 제한, 현지 콘텐츠 요건, 기술 이전 요건 및 수출 성과 요건, 및 수입, 자본, 수수료와 로열티의 송환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8) 미국 재화나 용역의 판매 또는 구매 제한하는 반경쟁 행위, 무역을 금지하기 위한 경쟁법의 남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9) 뇌물 수수 및 부패와 같은 하나 이상의 범주를 포함하거나 단일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0) 83 FR 42966-68.

4. 내용

가. 개요

NTE 보고서는 미국의 재화나 용역의 제공, 미국인의 직접투자,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상당한 장벽이 되거나 이를 왜곡하여 공정무역 경쟁을 저해하는 각 대상국가의 법률, 규정, 정책 또는 관행을 분석하고 이러한 법률 등에 의한 미국 통상의 무역왜곡효과를 평가·분석하고 있으며, 미국이 체결한 20여 개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을 검토·분석하고 있다. 또한 무역 장벽이나 무역을 왜곡하는 법률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와의 협상 또는 협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무역 장벽의 의미에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NTE 보고서의 관점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특정 국내 재화나 용역의 수출을 인위적으로 자극하거나, 혹은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법률, 규정, 정책 및 관행 등'으로 넓게 정의해 볼 수 있다. 또한 NTE 보고서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심지어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 및 제도에 대한 내용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2019년 NTE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강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제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몇몇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식재산권의 위협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모조품 생산 및 환적(transshipment), 지리적 표시,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있어 집단적 권리 관리(collective rights management), 법정 사용료(statutory license fee) 부과 및 민사소송 절차상 지식재산권 집행 곤란 등이 지적되었다.

이하에서는 2019년 NTE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 국가인 중국, 베트남, 태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나. 중국

WTO 협정 이후, 자국 및 해외 권리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규칙 등을 광범위하게 수정하였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법제의 부적절함이 지속적으로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침해 및 위조에 대항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켓은 여러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온라인 침해의 경우, 음악, 영화, 서적 및 잡지,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 게임 등의 유통에 있어 온라인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해외 텔레비전 콘텐츠의 검사에 관한 규정(Rules on the Review of Foreign Television Content)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텔레비전 콘텐츠의 라이선스에 기반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속하는 데에 있어 큰 우려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침해 콘텐츠가 온라인상의 합법적인 콘텐츠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태국

통지 및 게시 중단(notice and take-down)과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한 개정 법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침해 및 위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정부 차원에서 급습(raids), 감시(surveillance measures), 법 개정 및 대중 인식 고취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태국 정부에 대해 특히 온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 범위 및 빈도를 늘리고, 잠재적 위반자를 억제할 수 있는 처벌 등을 부과하며, 권리자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지 및 의견 개진 절차를 포함하는 법률·규정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및 개인의 영역에서 라이선스 위반 소프트웨어가 널리 사용되는 점, 광범위한 케이블 및 위성 시그널 절도,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상의 불법적 비디오 녹화, 온라인 침해 및 위조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의 부재 등이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거래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장벽이 보고되었는데, 2017년 발효된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 개정법에 따라 태국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규율 권한이 강화되면서 그 일환으로 컴퓨터 데이터 필터링 위원회(Computer Data Filtering Committee)가 설립되어 법원의 승인을 전제로 공공질서 내지 지식재산권을 위반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후 2018년 태국 정부가 차단하는 소셜미디어 포스트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위 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소 및 파기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개정법에는 사용자 생성(user-generated)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제거하는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safe harbor)이 포함되어 있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법률 준수를 독려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라. 베트남

베트남에서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온라인 침해와 모조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 방안은 행정적 조치 및 벌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5. 효과

NTE 보고서는 그 자체로 대상 교역국에 대한 법률상 강제조치를 기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 등의 선정, 무역대표부의 법률상 조사 및 협의, 보복조치의 결정 등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제4절 미국의 Notorious Markets 보고서

1. 배경

미국 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상업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 행위가 미국 내 정당한 권리 보유자들과 합법적인 사업자들 및 미국 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혁신과 창조성의 측면에서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및 보안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무역대표부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를 두드러지게 조장·관여하거나, 침해 및 위조의 규모가 커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유자와 소비자, 적법한 온라인 플랫폼 및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전 세계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해 조사·발표함으로써, 민간 부문과 각 무역 대상국 정부들이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를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침해 및 위조 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매년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2006년부터 발표된 Notorious Markets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포함되어 함께 발표되어 왔다. 또한 무역대표부는 2010년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행정부의 2010년 공동 전략 계획(The Administration's 2010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에 따라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별개로 비정기적인 점검(Out-of-Cycle Review) 결과를 반영한 Notorious Markets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1. 2.부

터는 매년 전년도의 Notorious Markets 보고서를 포함하는 'Notorious Markets에 대한 비정기적 점검 보고서(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가 발표되고 있다.

3. 절차

무역대표부는 매년 8월 중순경 연방관보에 이듬해 발행될 Notorious Markets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미국 외 온·오프라인 시장에 관하여 공중 의견을 제출할 것을 공지한다. 그로부터 약 45일 내지 60일 동안 일반 개인, 기업, 무역 대상국의 대사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은 연방규정 전자포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역대표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의견 수집과 더불어, 무역정책실무협의회 산하 스페셜 301조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연방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Notorious Markets 보고서를 확정하여 이듬해 4월 말경 발표하게 된다.

2019. 4. 26. 발행된 2018년 Notorious Markets에 대한 비정기적 검토 보고서는 2018. 8. 16.자 연방관보[31] 공지에 따라 2018. 10. 15.까지 수집된 의견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데, 당시 제출된 의견은 연방규정 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32]

【2018년 Notorious Markets 보고서 발행 절차】

2018. 8. 16.	연방관보 의견 제출 공지
2018. 10. 1.	공중 의견 제출 기한
2018. 10. 15.	공중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 및 기타 의견 제출 기한
2019. 4. 25.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및 2018년 Notorious Markets 보고서 발표

31) 83 FR 40821-23.

32) Docket Number USTR-2018-0027.

2018. 8. 16.자 연방관보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를 촉진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비롯하여 악명 높은 온·오프라인 시장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 특히 해당 시장이 Notorious Markets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 시장 이름 및 위치, 주요 소유자 및 운영자의 신원
- 온라인 시장의 경우,
  - 과거와 현재의 도메인 이름, 입수 가능한 등록 정보, 호스팅 제공자 및 운영자의 이름 및 위치
  - 방문자 및 페이지 열람 수, 사이트에서 보낸 평균 시간, 재고·판매 또는 거래된 침해 상품의 수, 스트리밍·공유·배포·다운로드·업로드·복제된 침해 파일의 수, 전 세계 또는 특정 국가의 인기 순위
  - 판매, 구독, 기부, 업로드 인센티브 또는 광고와 같은 수익원 및 해당 수익이 수집되는 방법
- 해당 시장이 정부 기관과 관련 있는지 여부
- 해당 시장에서 판매, 거래, 유통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되는 모조품 또는 불법 복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
- 특정 지역에서 혹은 재화 및 용역의 카테고리와 관련하여, 위조나 불법 복제품 및 서비스의 규모, 시장의 규모, 도달 범위 및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타 지표
- 불법 복제 또는 위조로 인한 권리 보유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 추정액 및 피해액 계산을 위해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

- 위조품 또는 불법 복제품의 수량 또는 피해 추정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여부 및 대략적인 증가 또는 감소액
- 판매·거래·유통 또는 이용이 가능하게 된 침해 상품·서비스가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 해당 시장에 대한 알려진 계약상·민사상·행정상·형사상 집행 활동 및 해당 집행 활동의 결과
- 게시 중단 공지(takedown notices), 침해 콘텐츠 삭제 요구, 침해중지 경고, 라이선스 조건 이행 요구, 서비스 조건 및 약관 이행 요구 등 권리 보유자가 취한 추가 조치 및 해당 조치들의 결과
- 해당 시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서비스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제한·억제하기 위해 취한 추가 조치,[33] 위조 및 불법 복제 문제를 다루는 해당 시장의 정책 및 가이드 라인과 그 효과, 권리 보유자와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협력 수준
- 기타 추가 정보

공공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27건, 28건, 33건의 공공 의견 및 반박 의견이 제출되었다. 제출자의 신원 역시 개인, 협회 및 단체, 해외 기업, 시민 단체, 해외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하고 있다.

33) 위조·불법 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제거, 판매자나 사용자 계정 비활성화 등의 정책을 포함한다.

【2016~2018년 1.1. Notorious Markets 보고서 관련 의견 제출자】

2016년	• Alibaba Group •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 Auto Care Association • Alliance for Safe Online Pharmacies •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 ANDEMA • beIN • Bose Corporation • Bulgari • Chanel • Cloudflare Rebuttal • Comment from John Lawrence, NA •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 DHgate LLC • 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GIPC, U.S. Chamber of Commerce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 INDICAM • Louis Vuitton Malletier SA • Motor &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 Moncler SpA •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 Ruten.com.tw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 Royal Thai Embassy • UNION DES FABRICANTS
2017년	• Alibaba Group • Alliance for Safe Online Pharmacies •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 ANDEMA •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 beIN Media Group • Chanel • Cummins • DHgate LLC •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 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 i2Coalition • Maus Freres • MBC Group	•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 Motor &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 Plataforma Afectats Pel Top Manta • Precious Metals Association of America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 Tencent • Thailand – Office of Commercial Affairs • Transnational Alliance to Combat Illicit Trade • Union des Fabricants • U.S. Chamber of Commerce –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2018년	•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 Alibaba Group • Amazon • Anonymous • Asia Video Industry Association •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 Business Action to Stop Counterfeiting and Piracy • CDA S.A. • Cloudflare • DHgate LLC • Digital Citizens Alliance •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 Embassy of Ecuador •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 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 i2Coalition • MarkMonitor •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 Pinduoduo Inc. • PT. Bukalapak.com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 Rahul Telang • Ruten • Thailand Government • Tencent Holdings Limited • Union des Fabricants • U.S. Chamber of Commerce • Vijay Patel

4. 내용

가. 개요

Notorious Markets 보고서는 무역대표부에 제출된 정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또는 상표 위조와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온·오프라인 시장의 실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2019. 4.에 발표된 2018년 Notorious Markets에 대한 비정기적 검토 보고서에서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가 심각한 33개의 온라인 시장과 19개국 25개의 오프라인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목하였다. 위 보고서는 불법 복제된 콘텐츠와 불법 복제품의 온라인 배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위조품과 불법 복제

품의 거래 촉진에 있어 자유무역지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 스트리밍 장치, 스트림-리핑(stream-ripping), 불법 복제 포털 및 앱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음악·영화·방송의 디지털 시장에 큰 피해를 입히는 새로운 불법 복제 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8년 Notorious Markets 보고서의 내용 중 본 연구의 대상 국가인 중국, 베트남, 태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나. 중국

중국은 지난 수년간 위조품의 주요 공급원으로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일부 중국 시장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위조품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이 널리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집행 또한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일부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위조 및 불법 복제 작업과 관련하여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중국 당국은 오프라인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집행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음의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특히 불법적인 위조품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시장	오프라인 시장
• DHGATE.COM • PINDUODUO.COM • TAOBAO.COM	• 관동성 선전 화창베이 전자시장 • 관동성 선전 뤄후 상업도시 • 베이징 실크마켓

다. 태국

태국의 팟퐁 시장(Patpong Market)은 유명한 야시장으로 스포츠 의류, 시계, 불법 복제 DVD 등 다양한 위조품의 거래되는 곳이다. 태국 왕립 경찰(Royal Thai Police)과 경제범죄진압부서(Economic Crime Suppression Division)의 감시

및 집행 조치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들은 여전히 위조품의 거래가 성행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라. 베트남

호치민 벤탄 시장(Ben Thanh Market)과 하노이 동 쑤언 시장(Dong Xuan Market)은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소매 시장 중 하나인데, 벤탄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조품 수량은 시장당 백만 개를 초과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약 5천만 달러의 피해를 끼칠 것으로 추정된다. 동 쑤언 시장에서도 화장품, 의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모조품이 거래되고 있다. 베트남 시장에 모조품을 공급하는 많은 수의 업체가 모조품과 밀수품 판매를 자제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 억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에 베트남 정부에 대해 위조품 및 라벨의 불법적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 조치를 강화하고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 효과

Notorious Markets 보고서는 법 위반 내용이나,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환경에 대해 분석한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한 분석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Notorious Markets 보고서는 그 자체로 보복조치 등 미국 정부의 의무적 조치를 촉발하지는 않지만, 불법 복제 및 위조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장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합법적인 콘텐츠 및 제품의 라이선스 배포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권리 보유자와 법 집행기관이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해당 국가의 정부 당국이 불법 복제 및 위조 시장을 조사하고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그 밖에도 Notorious Markets 보고서는 무역 관계에서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되거나 기업 및 민간에 위험 요소를 교육하는 효과가 있어, 궁극적으로 '시장 정화'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제5절 EU의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

1. 배경

국제 무역의 활발한 증대로 인해 비즈니스의 기회가 한층 확대된 만큼, 지식재산권자들은 자국뿐 아니라 제3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또한 자국 지식재산권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혁신과 창조 활동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체제를 제공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 of the European Commission, DG Trade)이 발표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34] 2013년 위조품 및 불법 복제 제품의 국제 거래는 전 세계 무역 시장 규모의 최대 2.5%(약 3,335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EU의 무역 시장 규모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위조품 및 불법 복제 제품은 총 수입의 약 5%(약 850억 유로)에 달하며,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의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로 EU 시장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 제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2. 법적 근거

이러한 배경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4. 11. 10. 제3국에서 EU 회원국의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법 복제 및 위조

34) 위 연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총국의 의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진행하였다.

상품 등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확대에 대처하여 장기적으로 EU 영토 밖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전략(Strategy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EU는 양자 간 무역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s) 체결을 비롯하여 제3국과의 IP 대담(IP Dialogues)과 같은 비입법적 방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총국은 2003년경 실시하였던 설문조사를 업데이트하여 향후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계획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제 무역이 증대하고 EU 회원국과 제3국 간의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제3국의 지식재산권법 체계에 따라 EU 회원국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교역 대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관련 정책 등이 EU 회원국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세계적 인식 제고 등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EU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2014년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전략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위 수정안의 주요 목표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지식재산권의 침해 정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한 방편으로 집중 관리 대상인 '우선대상국(Priority Countries)' 목록 작성 및 업데이트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층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절차

수정안의 채택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ights in Third Countries)'(이하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를 2015. 7.

과 2018. 2.에 각 발행하였다.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4년과 2016년 EU 회원국 이외 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대규모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2019년에도 이듬해 발행 예정인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를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 발행 절차】

2015년 보고서	2014. 3. 10.~2014. 6. 10.	설문조사 실시
	2015. 7. 8.	보고서 발생
2018년 보고서	2016. 3. 14.~2016. 6. 16.	설문조사 실시
	2018. 2. 21.	보고서 발행
2020년 보고서	2019. 3.~2019. 5. 26.	설문조사 실시
	2020.	보고서 발행 예정

설문조사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집행·침해 사례, 조치 및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의 지원 및 협조 사례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특정 주제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공개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든 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총국 차원에서 특히 지식재산권자, 소비자 및 산업 협회·단체, 대학, EU 대표부, EU 회원국 및 대사관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 참여가 독려되었다. 2016년 실시된 설문조사의 경우 약 50여 개국에서 165개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 1/6 가량은 중국에 관한 내용이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업체(약 38%)와 산업연합회 또는 집중관리단체 등 지식재산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약 23%)였으며, 그 외에 개인, 공공기관, 법률사무소, 소비자단체 등도 응답에 참여하였다. 2019년에도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는 2020년경 발행될 보고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는 설문조사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선대상국을 선정하고 있다.

- EU 대표부 및 통상 대표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 EU 조세 및 관세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 DG TAXUD)으로부터 수집한 EU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세 집행에 관해 정보
- 각국 정보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에 관한 데이터
- OECD 등 관련 기관 및 조직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 및 평가 자료
- WTO 무역 정책 보고서(WTO's Trade Policy Reviews)를 통해 공개된 정보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총국 시장접근팀(Market Access Teams)의 평가 자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평가 자료
- WTO 분쟁 해결기구 등 국제 기구의 심판 및 판결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3국과의 토론 결과
- 위조와 불법 복제에 대항하여 각국이 취한 조치 및 정치적 개입

4. 내용

가. 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위 보고서는 EU 회원국의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각국을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와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2018년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수준이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제1순위 국가로 중국이, 제2순위 국가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제3순위 국가로는 미국, 태국 등이 지정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국가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분류되었다. 이들 국가의 선정 기준은 절대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이 문제가 되는 국가라기보다는, 교역 관계에 비추어 EU의 이익에 가장 크게 손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2018년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 국가인 중국, 베트남, 태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나. 중국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권 전략은 지난 2008. 6. 채택된 '국가적 IP 전략(National IP Strategy)'이 여전히 주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에 베이징, 상하이 및 광저우에 3개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2017년 난징 청구에 추가로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가 점차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안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EU와 같은 외부 이해당사자에게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여하는 등 최근 들어 큰 태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의 개정은 오랜 시간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토 및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특히 모조품 생산이 세계 최대 수준인데, 2016년 EU의 지식재산권 관세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압류된 위조품의 약 80%가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가치로 따지면 약 72%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규모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확산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앙 도시와 지방 간에 행정

부와 법원의 지식수준, 부패 정도가 큰 차이가 있어 지식재산권 집행의 중요한 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 제출되는 해외 이해 당사자의 모든 문서가 공증 및 합법화(legalization)를 거쳐야 해서 실무적인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경찰기관 사이의 불완전한 협력,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손해배상액, 임시금지명령을 얻기 어려운 점 등이 중국에서 여전한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

다. 베트남

베트남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에 대한 검사, 임시 관세 절차 중단 등을 포함하는 입법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2016. 7. 시행된 형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제조 및 거래에 따른 법인의 형사 책임 등을 강화하였다.

베트남에서도 위조품 거래가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위조품 문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한 우려 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역 차원에서 당국의 협조 미비, 거리 시장과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전국적인 지식재산권의 침해, 불충분한 제재 조치, 전문지식이 부족한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라. 태국

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가 특히 심하게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수준이 가장 위험한 제3순위 국가로 지정되었다.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는 점과 억제력 있는 집행 조치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조율된 집행 및 기소 부족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사

소송이 지나치게 길고 비싸며, 임시조치와 금지명령이 법원에 의해 거의 내려지지 않는 동시에, 형사 제재 또한 충분한 억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색 영장을 얻기 어려워 증거 보존이 상당히 어려우며, 세관 절차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오직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태국의 특허법은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에 대한 법률적 보호 근거를 제공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지 및 게시중단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불법적인 콘텐츠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반면, 태국 법원 시스템의 더딘 절차 진행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상당한 곤란함이 존재한다.

5. 효과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EU 비회원국의 현황을 조사하고, 우선대상국을 분류하여 관련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다. 특히 중·소형 기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자들로 하여금 외국과 무역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비즈니스 전략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 준비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이는 양 국가가 양자 간 및 다자간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와 국가의 지식재산권 법률 및 관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단점을 식별 및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6절 시사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EU는 일찍부터

외국에서 자국 지식재산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당장 유사한 자료를 독립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 앞서 소개한 보고서 등의 자료는 대상 국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수출에 실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보고서들은 발행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작성되어졌으며, 발행국의 입장에서 대상 교역국을 상대로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는 다소간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 보고서 자체적으로도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자료가 전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전체적·포괄적 현황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민간·산업의 이해관계 등을 기초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별도로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제3장

중국, 베트남, 태국 관련 저작권통상 현안 조사 및 해결 방안

제1절 조사 절차 개관

1. 업체별 설문조사 진행

가. 설문 대상 업체 선정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는 총 36개의 업체가 참여하였다. 설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콘텐츠 분야를 크게 7개(방송, 영화, 음악, 게임, 웹툰, 캐릭터, 출판)로 분류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콘텐츠 업체들을 선정하였다. 각 국가별로 설문에 참여한 업체는 아래와 같다.

국가	설문 참여 업체	
중국 (34개)	• SBS • 가딘미디어 • 사운드UX • 예림당 • 락킨코리아 • 대원씨아이 • 카카오 • 라인 • 레진엔터테인먼트 • 로이비주얼 • 엔씨소프트 • 요미요미 • 유주얼미디어	• 이코믹스미디어 • KBS미디어 • E7엔터테인먼트 • 게임빌 • 위즈덤하우스 • 북큐브 •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 한터글로벌 • 서울미디어코믹스 • 아툰즈 • 4:33 •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 탭스토리

	• 지니뮤직 • 캐리소프트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D&P코퍼레이션 • EBS • MBC
베트남 (21개)	• SBS • 예림당 • 대원씨아이 • 레진엔터테인먼트 • 로이비주얼 • 요미요미 • 지니뮤직 • 캐리소프트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 KBS미디어 • 서울미디어코믹스	• 킹콘텐츠 • 아툰즈 • E7엔터테인먼트 • 4:33 •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 한터글로벌 • 엔씨소프트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D&P코퍼레이션 • MBC
태국 (22개)	• SBS • 예림당 • 락킨코리아 • 대원씨아이 • 라인 • 레진엔터테인먼트 • 로이비주얼 • 아트라이선싱 • 유주얼미디어 • 캐리소프트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 북큐브 • KBS미디어 • 한터글로벌 • 서울미디어코믹스 • 킹콘텐츠 • E7엔터테인먼트 • 4:33 •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 엔씨소프트 • 아툰즈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나. 설문지 구성 및 수정 작업

설문의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태국 3개국으로,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크게 (1) 콘텐츠 수출 개시 및 협상 단계 관련 항목, (2)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내용과 이유 관련 항목, (3)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관련 항목, (4) 저작권 법제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 관련 항목, (5) 각 분야별 저작권 문제 관련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업체들의 구체

적인 침해 사례와 대응 경험과 그 결과 등은 오픈형 문항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여 이를 통해 업체들이 경험한 실제 사례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콘텐츠 수출 개시 및 협상 단계 항목은, 수출 콘텐츠의 확보 방법, 수출 콘텐츠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권리, 콘텐츠 수입 시 활용하는 방식 등 수출 콘텐츠에 대한 기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수출 시 체결하는 계약의 방식과 내용을 파악하여 계약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내용과 그 이유 항목에서는,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유형을 크게 정부의 행정적 규제 측면과 저작물 유통 측면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해당 문제를 인지하게 된 계기와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하여 콘텐츠 수출 시 업체들이 주로 어떠한 유형의 문제를 겪고 있는지,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항목에서는, 업체들의 권리구제 시도 경험의 유무 및 있다면 그 조치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권리구제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가 있음에도 업체들이 권리구제를 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취해야 하는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조사할 수 있는 설문을 추가하여 정부에 대한 요청 사항을 조사하였다.

저작권 법제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 항목에서는, 권리자들이 수출 국가의 저작권 법제나 기존의 지원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각 국가별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등을 질문하였고, 중국의 경우 한-중 FTA

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활용 여부 등에 대한 질문들도 추가하였다.

1차로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설문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자 1차 업체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검증회의체 회의를 통하여 설문지 문항 구성이나 추가하여야 할 내용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 문항을 수정하였다.

다. 설문 응답 분석

설문지를 확정하고 2019. 9. 16.부터 2019. 11. 7.까지 총 36개의 업체에 설문지를 송부하여 32개의 업체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이후 각 문항별 응답률을 파악하여 저작권 수출 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업체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2. 업체별 심층 면담 진행

업체별 설문조사와 함께, 각 분야별로 업체별 심층 인터뷰를 2019. 9. 17.부터 2019. 10. 2.까지 총 8회 진행하였다. 업체별 심층 면담을 통해 업체가 콘텐츠 수출 시 겪는 여러 애로 사항을 파악하였고, 여러 문제점 중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대응책에 대한 업체들의 현실적인 생각과 정부에의 요구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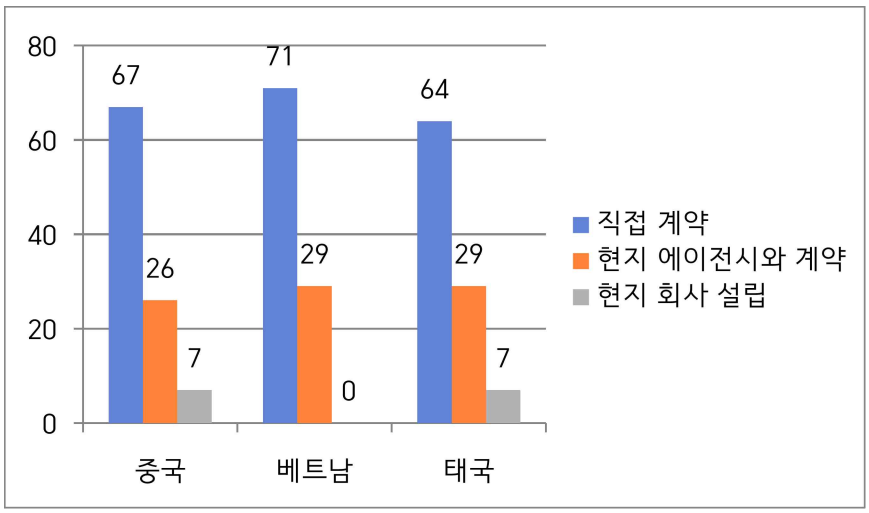
본 연구 진행을 위해서,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업체별 심층 면담과 함께 2019. 10. 14.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 소장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들과 해결이 어려운 이유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제2절 업체 설문 분석

1. 콘텐츠 수출 개시 및 협상 단계 관련 설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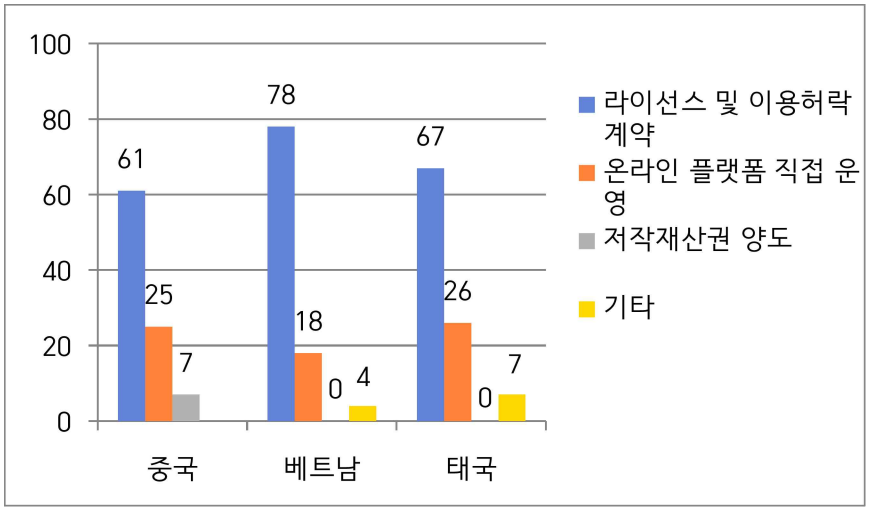
수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파악하기에 앞서, 콘텐츠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여 계약의 유형과 내용별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세분화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콘텐츠 수출 시 계약의 형태(A-9)를 조사한 결과, 직접 해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지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으나,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수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콘텐츠 수출 시 업체와의 계약 내용(A-10)을 조사한 결과, 3국 모두 라이선스(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콘텐츠 수출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체별 심층 인터뷰를 통하

여 저작권료의 정상적인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음악 분야나 출판 분야의 경우, 최소 저작권료 보장 방식(minimum guarantee)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최소 저작권료 보장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에 따라 저작권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는 최소 저작권료 이상의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콘텐츠들의 수출 현황과 더불어, 업체들의 해외 콘텐츠의 국내 수입 업무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각 국가별로 약 50%의 업체가 외국 콘텐츠에 대한 수입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콘텐츠를 국내에 수입하여 활용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입 콘텐츠를 판매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다른 업체에 라이선스 및 이용 권리를 부여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수입한 콘텐츠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입 콘텐츠를 활용하는 업체는 중국의 경우 3곳, 베트남 1곳, 태국 2곳으로 매우 드물었다.

콘텐츠 별로 살펴보면, 게임 분야의 경우, 해외 모바일 게임의 국내 수입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모바일 게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5] 2018년을 기준으로, 모바일 게임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수입 형태로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형태가 가장 많았고(54.1%),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39.1%)가 그 뒤를 이었다.[36] 나아가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해외 유명 캐릭터, 웹소설 등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게임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며, 현재는 해외 게임 개발 업체와의 IP 제휴를 통하여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음악 분야의 경우, 음원의 권리 주체는 저작권자, 실연자, 퍼블리셔 등으로 다양하고 각 권리 주체별로 확보해야 할 권리에 차이가 있는 등 그 내용 및 권리 확보 절차가 복잡하여 다수의 업체가 해외 음원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해외 음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업체가 저작권을 신탁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아닌 다른 주체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해당 국가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국내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저작권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해외 음원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권리의 신탁 여부 등 저작물의 이용허락 주체에 관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출판과 관련하여, 중국 출판콘텐츠의 국내 수입 시, 중국 출판사와 저자와의 출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출판사와 저자의 중국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출판사와 저자가 서로 다른 국내 출판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이중 계약'의 문제로 인해 원활한 수입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계약 체결 전 정확한 권리 주체 파악이 필요하다.

35) 모바일 앱 순위 분석 업체 'Gevolution'의 통계에 따르면, 2019. 10. 기준 국내 모바일 게임 상위 20개 중 9개가 중국 게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2019), 159면.

2.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내용과 이유에 관한 설문 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유형을 크게 정부의 행정적 규제 측면과 저작물의 유통 관련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가.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 유형 분석(B-1)

(1) 중국

중국의 경우, 정부의 행정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지 당국의 사전 검열 등 내용 통제 문제가 가장 높았다(42%). 특히, 웹툰의 경우 한국에서 인기 있는 웹툰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내용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웹툰 수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문화부에서 허가해주는 웹툰의 수도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판호 발급 관련 문제(발급 지연, 중단, 거부 등)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32%). 업체별 심층 인터뷰에서 높은 비율로 언급되었던 문제 역시 중국의 한한령에 따른 판호 발급 거부 문제였다. 한한령에 따라 현재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는 판호가 전혀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고, 따라서 일부 국내 업체에서는 중국 저작물인 것처럼 권리 처리를 하여 중국 저작물로 판호를 발급받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판호 발급 문제는 수출 단계의 문제로, 저작권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판호를 발급받기 위해 중국 저작물로 권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엔딩 크레딧에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기재하는 것과 같이 한국의 원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바, 판호 발급 거부 문제는 수출 시장에서 또 다른 저작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저작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불법 이용 및 유통 문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6%), 라이선스 계약 범위 초과 문제(26%) 및 판권을 구매하지 않은 포맷 표절 내지 유사 콘텐츠 제작 문제(26%)라고 응답한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저작물 유통과 관련하여 제기된 기타 문제로는, 비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선점하여 발생하는 단속의 어려움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 중국의 저작권 등록 방식이 형식적 심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아트워크를 사진 찍어 이를 저작물로 등록하여 원저작권자인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아트워크 등을 내려달라고 요구해도, 저작권이 등록되어있다는 이유로 이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였고, 이러한 악의적인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도 존재하였다.

(2) 베트남

베트남의 경우, 정부의 행정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없음' 응답을 제외하고는 현지 당국의 사전 검열 등 내용 통제(20%)와 기타 의견이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현지 시장 개척 자체가 어렵고, 법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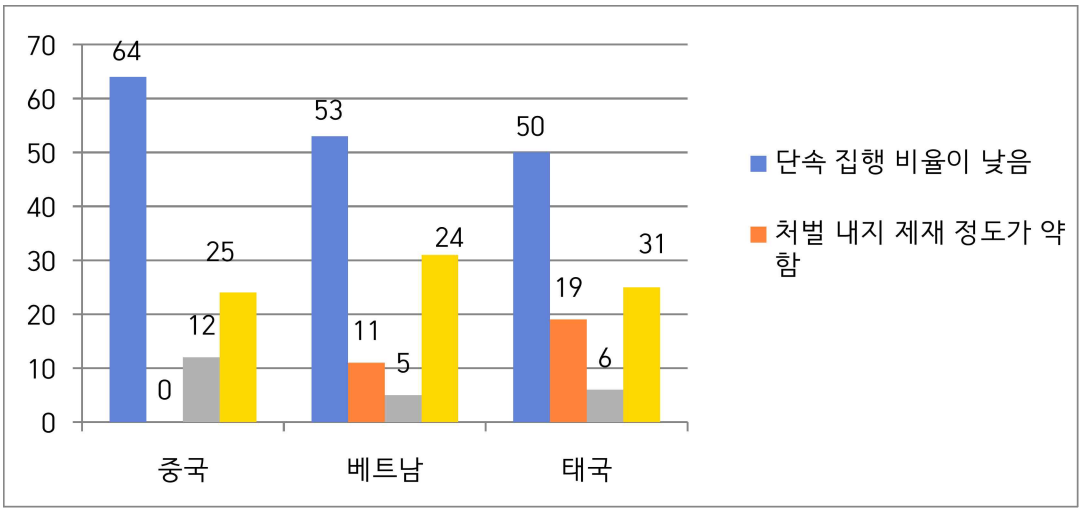
저작물 유통 관련 문제의 경우, 온라인 불법 이용 및 유통 문제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38%). 기타 의견으로는, 현지 라이센시의 불성실한 대응(서울미디어코믹스)의 문제를 제기한 업체도 존재하였다.

(3) 태국

태국의 경우, 정부의 행정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없음' 응답을 제외하고는 현지 당국의 사전 검열 등 내용 통제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20%). 특히, 태국은 왕권을 모독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작물 유통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없음' 응답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불법 이용 및 유통 문제(2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나.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분석(B-5)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3국 모두 '해당 국가에 법률이 있으나 실제 단속, 집행되는 비율이 낮음' 항목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 베트남, 태국 모두 저작권 관련 법제는 구비되어 있으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승소하더라도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 제기 등의 권리구제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웹툰이나 출판 분야처럼 콘텐츠의 배급 수익이 크지 않은 업계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콘텐츠 배급 수익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리구제 시도를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업체들이 언급한 기타 의견으로는, 주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의견이었고 해당 국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여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처럼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관련 법제가 마

련되어 있음에도 그 집행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추후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관련 설문 분석

가. 침해 국가 또는 국내법 제도를 이용한 권리구제 경험 및 그 결과 분석 (C-1, C-3)

(1) 중국

침해 국가 또는 국내법 제도를 이용한 권리구제 경험 유무를 조사한 질문에 대해, '없음' 응답이 가장 높았고(35%), 그 다음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내용증명 등 문제제기(24%)와 사이트에 대한 중단 요청 응답 비율(24%)이 높았다. 형사 고소, 고발, 신고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권리구제 시도 경험이 없는 업체들은, 권리구제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로 '승소 등 해결되더라도 실제 집행 등으로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았고, '절차가 까다롭거나 관련 비용,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20%로 높게 조사되었다.

실제 권리구제를 시도한 업체들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원씨아이의 경우, 중국 업체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하여 캐릭터를 사용한 완구, 게임 등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서에 중재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어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결과 중재를 통하여 중국 업체로부터 손해배상도 받고, 불법으로 제작한 시즌2도 삭제되었으며, 향후 침해가 발견되면 중국 업체가 확보한 시즌1에 대한 권리도 무효화시킨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대응에 성공한 사례도 존재하였으나, 많은 업체들의 경우, 내용증명 등 문제제기시 상대방 측이 반발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송달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는 등 그 권리구제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사이트에 대한 중단 요청 결과로는, 불법 유통 사이트의 서버가 침해 국가에 없는 경우 침해 국가에서도 사실상 단속이 불가하여 중단 요청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답변한 업체가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연락 수단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2) 베트남, 태국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 권리구제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내용증명 등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베트남 30%, 태국 32%).

권리구제를 시도하지 않은 업체들은 그 이유로 '절차가 까다롭거나 관련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권리구제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베트남 30%, 태국 29%). 이와 더불어 '승소 등으로 해결되더라도 실제 집행 등으로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베트남 26%, 태국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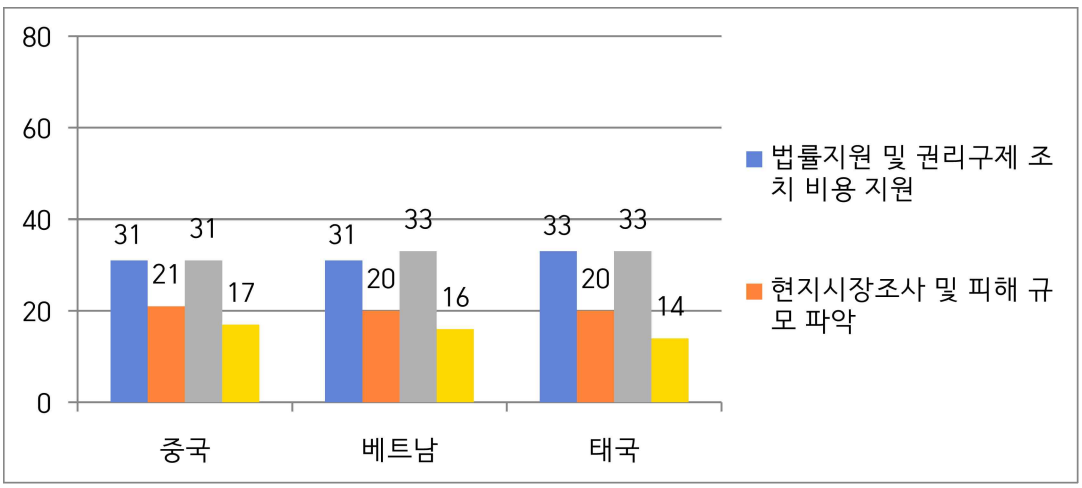
권리구제를 시도한 결과에 대한 응답의 경우, 내용증명 등 문제제기 결과, 반응도 늦고 어렵다거나, 게시물을 삭제 요청함에 있어 직접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문제제기에 대한 이유와 설명·증거제시 등을 직접 해야 하므로 비생산적이라거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한다는 답변 등 부정적인 답변이 상당수 있었다. 민사 가처분 신청이나 소제기 등 법적 조치의 결과에 대해서는, 권리증거자료 준비에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법제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대응이 어려웠다는 등 부정적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내용증명 등의 권리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체들과의 심층 인터뷰에서는 오히려, 수출하는 국가의 대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는 답변도 존재하였다.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경우, 불법 유통되는 상품을 신고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곳도 있어, 대형 플랫폼과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에 대응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실제 판매가격이 60% 미만으로 내려가면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판매자 삭제 조치를 취해준 적도 있고, 이러한 방식이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막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취해야 할 가장 필요한 조치 관련 설문 분석(C-4)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취해야 할 가장 필요한 조치로 3국 모두 '법률 지원 및 권리 구제 조치 비용 지원'과 '국가적 차원의 실무 협약,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 촉구'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업체별 심층 인터뷰에서는, 선진 국가의 경우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와 같이 자체적으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민간 단체들이 존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그러한 역량 있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응답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권리자들의 창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체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나아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 외에도, 정품 인증제나 국가 브랜드화를 통한 저작권 보호 기술 제고 등의 방안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앨범의 경우 정품만 음원 차트에 반영된다고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 정품을 구매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정품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자신이 아끼는 대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국가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이 정품 이용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활용 여부 및 그 결과 관련 분석(C-5)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활용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중국과 태국의 경우 '없음'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없음' 응답을 제외하고는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이용자 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크 포렌식마크 기술'과 '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웹툰 수출 업체들의 경우, 캡처가 안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오히려 많은 기술적 조치를 넣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관련 설문 분석 결과, 콘텐츠 수출 업체가 자체적으로 권리구제를 시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하며, 실제로 권리구제를 시도해 본 비율도 낮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업체들은 정

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권리구제에 필요한 비용이나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바, 이러한 업체의 요구 사항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저작권 법제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 관련 설문 응답 분석

가. 저작권 보호 인식 및 당국의 대처 관련 응답 분석(D-4)

3국 모두 현지 업체가 저작권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지 정부 또는 관계 부처에서 취하는 가장 일반적 조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위반 행위 중단 조치'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행정단속'과 '실제 행위자에 대한 위반 행위 중단 조치'의 응답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였다.

나. 한·중 FTA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관련 응답 분석(D-9 내지 D-13)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에 대한 콘텐츠 수출 업체들의 인식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중 FTA 제15.28조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규정과 관련한 조치를 알고 있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하고 이용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7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업체별 면담에서도 한·중 FTA 규정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설문지를 통해 처음 접하였다는 의견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다. 베트남 및 태국의 저작권 관련 법제 및 지원 절차 관련 응답 분석

베트남 및 태국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자 보호 규정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작권 등록 및 관련 지원 절차 이용 경험 관련 응답에서도, '이용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저작권 법제 및 지원 절차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면서, 콘텐츠 수출 업체들의

저작권 법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낮아,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 및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함을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콘텐츠 수출 업체에 저작권 법제의 구체적 내용, 지원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5. 분야별 설문 응답 분석

가. 방송 분야 설문 응답 분석

콘텐츠 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와 관련한 사전적 권리 보호 수단을 활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한 곳이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기타 포맷인증보호 협회에 가입하였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변하여, 사전적 권리 보호 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방송 분야 업체 중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비한 곳은 다수 있었으나, 콘텐츠의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하고 서버가 해당 국가에 없는 경우라면 모니터링을 하여도 단속이 불가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다.

나. 음악 분야

음악 분야의 경우, 음악 저작권료 징수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다. 중국의 경우, 국제 표준 코드인 ISRC가 아닌 중국 고유의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료 징수가 더욱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불법 유통을 막고 콘텐츠가 원활하게 유통되기 위하여 실연자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하고, 실연권 단체 네트워크나 민간 사기업 네트워크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다. 게임 분야

게임 분야의 경우, 중국, 베트남, 태국 퍼블리셔들이 게임에 관심을 보이면서 apk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apk 파일을 보내주면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는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pk 파일은 로컬라이징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분해할 수 있어 이를 분해하여 소스코드 등을 전부 확인한 후 이를 무단으로 게임 개발에 사용하는 것이다. 인디 게임개발사의 경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해도 해당 업체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게임 프로그램 저작물의 해외 불법 복제, 전송을 통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파악하고자 게임 콘텐츠 수출 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든 업체가 '독립 마켓 차단 및 안드로이드, IOS 마켓 이용 강제 등 현지 규제를 통한 단속'이라고 응답하였다.

6. 설문지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가. 설문 대상 국가 확장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콘텐츠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 중 대표적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3국을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및 업체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중국, 베트남, 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한국 콘텐츠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같은 남미 국가에서도 K-POP 열풍과 함께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설문 대상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설문 역시 그 대상 국가가 90여 개로 다양한 국가에서의 IP 보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 수출 현황이나 그 정도를 파악하여 설문 대상 국가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나. 주관식 설문 문항의 확대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주로 선택 문항으로 구성되어, 업체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는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였다. 선택 문항에도 기타 항목을 두었지만, 기타 문항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설문의 경우, 매년 전체 문항 수를 줄이되 주관식 문항 수를 늘려 업체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문지를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 구성에 있어서, 업체들의 보다 자세한 사례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관식 문항 수를 늘리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콘텐츠 분야별 설문 문항의 구체화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분야를 크게 7가지(방송, 영화, 게임, 음악, 웹툰, 캐릭터, 출판)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콘텐츠 분야마다 특수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대응 방안 역시 콘텐츠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콘텐츠 분야별로 현안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콘텐츠 분야의 구분은 다소 그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추후에는 콘텐츠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콘텐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설문 문항들을 추가하여 각 분야별로 겪는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라. 만족도 문항 추가를 통한 개선 정도 파악

본 연구의 설문은 저작권 수출에 있어서의 통상현안과 저작권 관련 문제 및 필요한 대응책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추후 저작권통상보고서가 제작되고, 설문조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만족도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그 개선의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해당 국가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이 지난 2년 동안 개선되었는지 여부

- 해당 국가의 저작권 보호(저작권 등록 제도나 절차 등)가 만족스러운지 여부
- 해당 국가의 저작권 집행이 만족스러운지 여부
-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입법 조치 및 그 실행이 만족스러운지 여부
-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플랫폼사 등과 같은 중재자들과의 협업 수준이 만족스러운지 여부

마. 구체적 설문 문항의 수정 필요성

본 연구의 설문 진행 과정에서 수출 업체들은 수출하는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수출 업체의 콘텐츠 권리 확보에 관한 문항의 경우, 어떠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미리 기존 콘텐츠 수출 관련 계약서를 분석하여 콘텐츠 수출에 있어 업체들이 확보하여야 하는 권리들을 파악하여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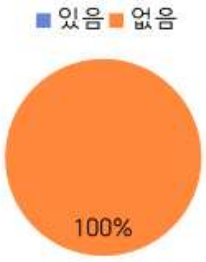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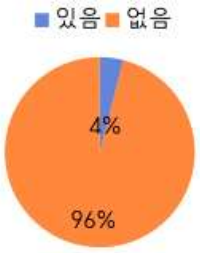
또한 수출의 대상이나, 라이선스 확보에 있어서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등의 요소들도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데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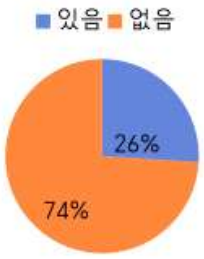
바. FTA 체결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 현황과 향후 설문조사 관련 제안

저작권 수출 관련 개별 업체와의 면담 결과, 중국과 같이 수출 대상 국가와의 사이에서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i) 해당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관련 조치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ii) 체결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관련된 구체적 규정 및 그로 인하여 업체들이 보

호받을 수 있는 방안(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저작권 추정 규정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관련 설문 결과】

항목	질의	응답
D9	귀하는 '인터넷 등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치'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이러한 조치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중 FTA 규정 제15.28조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관련)	
D10	귀하가 특정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 제3자가 이를 무력화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 적이 있습니까? (한·중 FTA 규정 제15.8조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D12	귀하가 이용계약이나 권리처리를 위하여 저작물에 부착, 부기하여 전송하는 '권리관리정보'가 콘텐츠 수출 이후 무단으로 삭제되거나 권한 없이 제거,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한·중 FTA 규정 제15.9조의 권리관리정보(어떤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고, 그 저작물의 이용계약이나 권리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의 보호 관련}	
D13	(위 12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는 권리관리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제거·변경하여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전달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서술형 응답) 온라인 기준 위원회를 통한 삭제 요청(판권보호중심 등), 직접 삭제 요청 등

D19	한·중 FTA의 저작권 추정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인증제도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저작권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에 향후 현황 조사 및 설문 구성에 있어서는, 각국의 FTA 규정 및 국제조약 조항을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응답하는 업체들이 해당하는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적시하고 그에 따른 해결의 실마리를 FTA 규정 및 국제조약 등에서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한·중 FTA 및 한·베 FTA에 따르면 한국의 저작권 수출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배타적 복제권,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사법당국에 저작권 불법복제품 등의 몰수 및 폐기 권한, 권리 침해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 침해물품 통관보류절차 등 한국 법률과 유사한 수준의 일련의 집행조치 역시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적용 및 집행을 요구하는 한편, 개별 업체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개별적 권리구제를 동시에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절 저작권통상 현안의 해결 방안 관련 검토

1. 서론

저작권통상 현안의 해결 방안으로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적 차원 등에서 다양

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연구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해결 방안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본 연구의 목적상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배경에서 주요 해결 방안에 관한 검토 및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개별 업체들에 대한 저작권 수출에 관한 인터뷰 결과, ① 업체들은 저작권 수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해당 국가에 법률이 있으나 실제 단속, 집행되는 비율이 낮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중국, 베트남, 태국 공통), ② 업체들이 해당 국가에서 권리구제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도 '승소 등 해결되더라도 실제 집행 등으로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및 '절차가 까다롭거나 관련 비용,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어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③ 특히 많은 업체들이 문제의 유형으로 꼽은 온라인 불법 이용 및 유통 문제나 라이선스 계약 범위 초과, 판권을 구매하지 않은 포맷 표절 내지 유사 콘텐츠 제작 문제 등은 궁극적으로는 해당 국가 내에서 법제에 따른 침해 대응 및 그에 따른 피해 보전절차가 용이해질 경우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37] 실제 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법률의 영역인지 또는 당국의 집행의 문제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국의 저작권 관련 주요 규정이 어떠한지를 FTA 및 국제조약과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38]

또한 업체들이 저작권 수출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꼽은 '국가적 차원의 실무 협약,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 촉구'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적 차원의 협약'에 해당하는 FTA가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협약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게 되는 주체인 각국의 협단체 등의 저작권 관련 업무 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에 따라 해

37) 업체들이 저작권통상 현안 조사 결과 수출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답한 내용 중 행정 규제 및 사전 검열, 판호 발급 관련 문제 등은 법제의 차이보다는 국가 간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38) 이에 관해서는 아래 2.항에서 다룬다.

당 국가에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비교적 자리를 잡고 있는 음악저작물 분야에서의 관리단체 운영 및 교류 현황을 검토해 보았다.[39]

마지막으로, 많은 업체들이 저작권 수출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꼽은 '법률 지원 및 권리 구제 조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업체들의 권리 구제 및 피해 보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우며, 현행재 직접적인 소송 비용 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작권 수출 관련 각종 지원 제도의가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저작권 수출 관련 지원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관련 제안을 하고자 한다.[40]

다만 이와 같은 분석 및 검토는 설문 응답을 통하여 취합된 문제에 대하여 조사 가능한 법제와 현황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외에도 국가별 저작권 인식,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한 심층적인 문제 분석과 해결 방안에 관하여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국가 간 FTA 및 국제조약 적용 실질화

가. 들어가며

저작권 관련 수출 장벽의 경우, 산업 통상의 측면에서 보면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 중 지식재산권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국가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무역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존재하고, 그 외 복수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 역시 존재한다.

본 항에서는 한국과 다른 국가 간 체결된 FTA 및 여러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39) 이에 관해서는 아래 3.항에서 다른다.

40) 이에 관해서는 아래 4.항에서 다룬다.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저작권 관련 주요 규정이 각국의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지 및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조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작권통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나. 각국과의 FTA에 따른 저작권 관련 규정 및 이행 절차

(1) 중국

1) 한·중 FTA의 저작권 관련 규정[41)]

한국과 중국은 2015. 6. 1. 양국 정상이 FTA 타결에 정식 서명을 하였고, 이후 2015. 12. 20.자로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이 중 저작권 관련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권리 범위 및 보호 측면

① 한국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각각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신호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15.6조 제2항). 특히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신호의 재방송, 복제 및 고정(방송 녹화 및 녹화한 방송을 배포·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허락 및 사후금지권을 부여하고 있다(제15.7조 제2항).

② 한국의 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의 보호기간을 방송 시점으로부터 최소 50년 보호하도록 하였다(제15.6조 제3항). 중국은 자국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해서는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반면 외국 방송사업자의 방송은 TRIPs 협정에 따라 20년의 보호기간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중국과 동일하게 50년의 보호기간이 인정되고 있다.

41) 이하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상세 설명자료(2015), 104~112면을 참고하였다.

③ 한국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제15.7.조 제1항).

④ 민사, 형사, 행정 절차에서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하고 있다(제15.23조).

(나) 기술적 보호조치 측면

① 저작물, 실연, 음반의 이용 통제(예컨대 CD 복제 방지장치) 및 접근 통제(예컨대 DVD 지역코드)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하고 있다(제15.8조).

② 전자적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어떤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예: 워터마크, 레이블 등)}의 제거 혹은 변경 행위,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저작물·실연·음반 등을 일반 대중에게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제15.9조).

(다) 권리 구제 수단 측면

① 상표위조 및 저작권·저작인접권(음반, 실연)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권리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제15.24조 제3항).

② 침해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도구,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 및 침해로부터 발생한 자산에 대한 압류 권한 및 저작권 불법복제품,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도구의 몰수 및 폐기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다(제15.24조 제5항~제6항, 제15.26조 제5항 및 제15.27조 제3항 다호).

③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해당 침해와 관련하여 침해자가 소유·통제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24조 제7항).

④ 집행당국이 일방의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과하였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기관에 부여하고 있다(제15.25조).

⑤ 침해물품이 수입·수출·환적되거나 자유무역지대 혹은 보세창고에 위치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물품 통관보류를 신청할 절차 가 있고(제15.26조 제1~3항), 신청이 없어도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세관이 직권에 의해 침해물품 통관 보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15.26조 제4항).

⑥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고의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15.27조 제2항).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대하여 이미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가 큰 영화 복제 유형에 대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⑦ 각 당사국이 인터넷 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5.28조).

⑧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얻은 모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다(제15.27조 제3항 나호).

2) 한·중 FTA와 중국 저작권법 주요 규정 비교[42)]

(가) 저작인접권에 있어서의 보상청구권

한·중 FTA 제15.7조 제1항에서는 한국 저작권법(상업용 음반에 대한 방송 보상금청구권 및 공연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가 실연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제37조[43)] 및 제38조[44)]), '음반(영상)제작자가 그 제작한 음반영상 제품에 대하여 타인에게 복제, 발행, 임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제42조[45)]) 각 규정하여 대가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언 및 내용상 한국 저작권법 및 한·중 FTA 제15.7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상

42) FTA와 당사국 법률 규정 간 차이가 있는 규정 중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만을 열거하였다.

43) 제37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공연자(연기자·연출단체)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연단체가 공연하는 경우 당해 단체 책임자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한다. 기존의 각색·번역·주석·정리된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한 저작자 및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第三十七条 使用他人作品演出，表演者（演员、演出单位）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演出组织者组织演出，由该组织者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使用改编、翻译、注释、整理已有作品而产生的作品进行演出，应当取得改编、翻译、注释、整理作品的著作权人和原作品的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44) 제38조 공연자는 그 공연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6) 공연이 정보네트워크을 통하여 대중에 전파될 수 있도록 타인에게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第三十八条 表演者对其表演享有下 列权利：（六）许可他人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表演，并获得报酬}.

45) 제42조 음반영상 제작자는 제작한 음반영상 제품에 대 하여 타인에게 복제발행·대여·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전파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고 아울러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第四十二条 录音录像制作者对其制 作的录音录像制品，享有许可他人复 制、发行、出租、通过信息网络向公 众传播并获得报酬的权利).

청구권'이라기보다는 배타적 권리에 근거한 이용허락 권리 및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한국 저작권법상 2차적 사용에 따른 보상청구권과는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성명 표시로 인한 권리자 추정

한·중 FTA 제15.23조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절차에서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해당 규정이 집행된다면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저작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도 해당 저작물에 성명이 표시되어 있다면 일응 성명이 표시된 자가 권리자로 추정되어 민·형사상의 구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명문상 이와 같은 성명 표시로 인한 권리자 추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여전히 현재도 중국 정부로부터 권리 인증을 받은 후에야 권리 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 및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제거 금지

한·중 FTA 제15.8조에서는 저작물, 실연, 음반의 이용 통제 및 접근 통제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하고 있고, 제15.9조에서는 워터마크 또는 레이블 등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혹은 변경 행위,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저작물·실연·음반 등을 일반 대중에게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 제48조 제6항[46]에서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

46) 제48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침권행위가 있는 경우 정황에 따라 침해의 중지·영향력 제거·사과·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침권행위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을 몰수 소각할 수 있으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침권행위 복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주요 자재·공구·설비 등을 몰수 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당해 저작물·음반영상 제품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고,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전파권 보호조례 제4조에서도 기술조치의 회피·파괴 금지 및 도구 등의 거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한·중 FTA에서 규정을 둔 '접근 통제' 조치의 우회 금지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행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및 이를 제거·변경한 저작물을 일반대중에게 전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FTA 규정의 직접 적용 및 구체화된 집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한·중 FTA 이행을 위한 당사국 법률 개정 여부

한국의 경우 FTA는 양자협정으로 국회의 비준을 거치면 별도의 법률로 전환하는 조치 없이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다만 통상적인 법률의 경우 하위 입법인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 등으로 구체화되는데, 일반적인 관세 인하 및 통관 간소화 등과 관련된 사항 외에,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부문의 이행만을 위하여 기존의 국내 법률 및 하위 입법을 제·개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47]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6)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당해 저작물·음반영상 제품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第四十八条 有下列侵权行为的，应 当根据情况，承担停止侵害、消除影 响、赔礼道歉、赔偿损失等民事责 任；同时损害公共利益的，可以由著 作权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侵权行为，没收违法所得，没收、销毁侵权 复制品，并可处以罚款；情节严重 的，著作权行政管理部门还可以没收 主要用于制作侵权复制品的材料、工 具、设备等；构成犯罪的，依法追究 刑事责任：(六) 未经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 关的权利人许可，故意避开或者破坏 权利人为其作品、录音录像制品等采 取的保护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 权利的技术措施的，法律、行政法规 另有规定的除外；}.

한편, 중국의 경우 FTA는 별도의 비준 동의 없이 국무원의 승인에 따라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무원의 승인도 이루어져 발효가 되었으나, 그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TRIPs 협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최소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 WTO 패널의 재결에 따라 2010년 법률 개정을 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2012년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0. 제3차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제3차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i) 실연자가 타인이 영상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합리적인 사용료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 및 (ii) 실연자 단체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48] 현재 이용자와 권리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 개진 속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2) 베트남

1) 한·베 FTA의 저작권 관련 규정[49]

한국과 베트남은 2015. 5. 5. FTA에 정식 서명을 하였고, 이후 2015. 12. 20. 자로 한·베 FTA가 발효되었다. 이 중 저작권 관련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47)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경우 이로 인하여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관련 국내 법률에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5053.html).

4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2014. 1.), 38~39면.

49) 이하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한·베 FTA 상세 설명자료(2015), 85~92면을 참고하였다.

(가) 권리 범위 및 보호 측면

①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각각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신호의 모든 방식 및 형태로의 복제 관련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특히, FTA 체결 전과 달리 실연자도 음반 복제 관련 배타적 권리(사용료 수입 분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제12.8조 제1항).

② 한국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방송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12.8조 제2항).

③ 저작권·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간 콘텐츠의 용이한 접근·전달과 로열티의 상호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 집중관리단체간 협정 체결 원활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제12.8조 제3~4항).

④ 민사, 형사, 그리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행정 절차에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2.9조 제2항).

(나) 권리 구제 수단 측면

①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위성 신호와 관련한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 또는 형사 구제절차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12.8조 제5항).

- 기기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위성 신호를 합법적인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기기·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출입·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
- 합법적인 신호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된 위성 신호임을 알면서 의도

적으로 신호를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②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및 상표 침해 민사소송의 종결 시에 패소자가 승소자의 법정 비용·수수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제12.9조 제4항). 이는 한국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저작권·저작인접권(음반, 실연) 침해 및 상표위조 관련 민사 소송에서는 권리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제12.9조 제5항).

③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침해물품, 침해행위와 관련된 재료나 도구에 대한 압류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있다(제12.9조 제6항).

④ 집행당국이 일방의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과하였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기관에 부여하고 있다(제12.9조 제9~10항).

⑤ 관계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을 유치하거나 압류했을 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 통관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제12.9조 제12항).

⑥ 세관에서 통관보류되고 불법복제품 또는 상표 위조품으로 판정되어 몰수된 물품은 폐기되거나 권리자에게 어떤 손해도 가지 않는 방식으로 상거래에서 제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9조 제13항).

⑦ 각 당사국이 인터넷 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2.9조 제15항).

2) 베트남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적용 문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50] 제5조 제3항에서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국내법과 국제조약 간 규정이 충돌할 때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외에도 아래 베트남 민법, 상법, 국제투자법 등 다른 주요 법률 문언에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규정(영문 번역)	관련 규정(국문 번역)
지식재산권법 (2010)	Article 5 Application of laws 3. Where an international treaty of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member contains provisions different from those in this Law, such international treaty shall apply.	제5조 법률의 적용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이 이 법과 다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국제조약이 적용된다.
민법(2015)	Article 665.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y in terms of civil relations involving foreign elements 1. In case an international treaty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signatory contains regulations on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tracting participants in the civil relations involving foreign elements, such international treaty shall prevail. 2. In case an international treaty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signatory contains	제665조 외국의 요소 관련 민사 관계에 관한 국제조약의 적용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에 외국 요소와 관련된 민사 관계의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경우, 그러한 국제조약이 우선한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에 이 규범의 규정과 다른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 요소와 관련된 민사 관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국제조약이 우선한다.

50) 베트남 저작권법은 독립된 법이 아니라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의 일부로 제정되었으며, 지식재산권법 제2부의 제13조에서 제57조에 저작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provisions different from those in this Code and other laws in terms of applied law on civil relations involving foreign elements, such international treaty shall prevail.	
상법	Article 5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treaties, foreign law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1. Where an international treaty of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member contains provisions for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or other provision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the provisions of such international treaty shall apply.	**제5조 국제조약, 외국법 및 국제 상관습의 적용**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외국법 적용, 국제 상업 관행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제투자법	Article 4 Application of the law on investment, relevant laws and international treaties 3. Where an international treaty of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member contains provisions which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then such international treaty shall prevail.	**제4조 투자법, 관련법 및 국제조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속한 국제조약이 이 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국제조약이 우선한다.

한편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시행령(이하 'Circular 02')[51] A. IV장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제조약은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시행령에서도 '베트남이 적용될 국제조약 회원국'이고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베트남

51) JOINT CIRCULAR No. 02/2008/TTLT-TANDTC-VKSNDTC-BVHTT&DL-BKH&CN-BTP guiding the application of a number of legal provisions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peoples courts.

법률 규정이 국제조약의 규정과 다른 경우' 국제조약이 베트남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영문 번역)	관련 규정(국문 번역)
Circular 02. IV. 2. Application of treaties 2.3. Conditions on application of treaties a) Treaties on intellectual property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are in force when acts or events being subject matters of disputes occur.	Circular 02 A.IV장 제2조 조약의 적용 2.3. 조약의 적용 요건 a) 분쟁 사건 또는 행위 발생 시점에 베트남이 적용될 국제조약에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b) Provisions of these treaties on intellectual property are different from those of Vietnams legal documents on the same matter. For example: Regarding the copyright protection duration, there is an inconsistency between Article 27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Clause 4, Article 4 of the Vietnam-US Bilateral Trade Agreement. In this case, the provisions of the Vietnam-US Bilateral Trade Agreement must be applied to settling copyright disputes between Vietnamese and U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b) 동일한 사안에 관해 베트남 법률 규정과 국제조약의 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시: 저작권보호기한에 관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7조와 베트남-미국 FTA 제4조 제4항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베트남 개인/단체와 미국 개인/단체 간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베트남-미국 FTA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c) In case a Vietnamese legal document contains provisions similar to those of a treaty on the same matter, Vietnamese legal provisions will apply.	c) 동일한 사안에 관해 베트남 법률 규정과 국제조약의 규정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베트남 법률을 적용한다.
d) In case a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matter is not governed by Vietnamese law, relevant provisions of a treaty concerning this matter will apply.	d)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 베트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e) In case of a dispute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volving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of a foreign country which, together with the Socialist Republic of	e) 외국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해당 국가와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된 국제조약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효력이 발생한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단, 베트남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of treaties, the treaty with the latest date of entry into force will apply, unless otherwise jointly provided for or agreed by this country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과 해당 국가 간 별도의 조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와 같은 문언대로 법률을 적용할 경우,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국내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국제조약'이라 함은, '베트남 국제조약의 체결・가입과 이행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경제・상거래・노동・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참가국 사이에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 조약'을 의미하는바, 결국 이는 양자 또는 다자 조약 여부를 불문하므로,[52] FTA 역시 해당 국제조약에 포함되고, 따라서 한·베 FTA 규정이 베트남 국내 법률과 다를 경우 한·베 FTA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달리 사법부의 판결문 및 판결 요지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판결의 수 역시 매우 적은 관계로, 실제 베트남 사법부에서 위와 같은 법률 문언을 적용하여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국제조약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 현지의 학계 전문가 및 법관을 통하여 실무 사례를 확인한 바로도 그와 같은 사례는 없다는 점을 구두 확인하였다. 실무상 베트남 정부에서는 국제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내법 또는 동법 관련 규정(한국 법률상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과 유사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관련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하는바, 결국 위와 같은 법률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국내 법률 규정이 미비하거나 국제조약과 국내법 규정이 다른 경우 국제조약의 직접 적용을 요청하는 것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52) Nguyễn Bá Diến, Giáo trình Tư pháp Quốc tế, NXB ĐHQG Hà Nội, 2013, tr. 63., 손경한 외 6인,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2015)에서 재인용.

3) 한·베 FTA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주요 규정 비교

(가) 저작인접권에 있어서의 보상청구권

한·베 FTA 제12.8조 제2항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방송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33조[53]에서는 이용자가 음반 내지 비디오녹화물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되 그에 대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에 로열티 내지 수입 등의 사용료를 분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취지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시각 고정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방송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2차적 사용에 따른 보상 청구권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33조에 따르면 권리자는 방송사업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저작권 사용료(저작인접권의 경우 우리 법제상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실제로는 방송사업자와 권리자 사이에 일종의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권리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이와 같은 청구를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음악저작권자보호센터(VCPMC) 및 음반제작산업협회(RIAV)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사용료 등을 청구

53) 제33조 이용허락이 불필요하나 저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 저작인접권의 이용

1. 어떠한 방식으로든 후원 내지 광고를 받거나 유료인 방송을 제작함에 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저작자, 저작권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비디오녹화물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이용일로부터 합의한 저작권이용료(저작인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하고 관련 비용을 제한 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나) 성명 표시로 인한 권리자 추정

한·베 FTA 제12.9조 제2항에서는 민사·형사, 그리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행정절차에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해당 규정이 집행된다면 베트남 내에서 우리나라 저작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도 해당 저작물에 성명이 표시되어 있다면 일응 성명이 표시된 자가 권리자로 추정되어 민·형사상의 구제 등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이와 같은 성명 표시로 인한 권리자 추정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여전히 실무상 저작권 등록증명서 등 저작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한·베 FTA 적용을 위한 당사국 법률 개정 여부

한국의 경우 FTA는 양자협정으로 국회의 비준을 거치면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전환하는 조치 없이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헌법 제6조 제1항),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베 FTA 역시 일반적인 관세 인하 및 통관 간소화 등과 관련된 사항 외에 FTA의 지식재산권 부문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의 기존 법률 및 하위 입법을 제·개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한 이후 TRIPs 협정에 부합하도록 몇 차례에 걸쳐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한 바 있다.[54]

54)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가이드-베트남(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vietnam/vietnam.do).

(3) 태국 – FTA 미체결

한국과 태국 간에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바, 태국은 저작권 관련 주요 국제조약 중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c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에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에 따라 태국에 대하여는 베른협약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권리구제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태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총 16개국이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RCEP 협정문이 향후 서명되어 발효될 경우 그에 따른 규율 또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소결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으며, 권리 추정 적용을 강화하였고, 실제 이러한 취지의 규정들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법률에도 반영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 간의 FTA 체결 이후 후속조치 사례들을 살펴보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FTA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화된 집행조치 등을 발령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FTA는 양국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양국 간 지식재산권 역시 균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 및 관련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기업들의 저작권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데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저작권 관련 주요 국제조약의 적용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는 베른협약 외에도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IPO 조약')과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이하 '로마협약') 등을 들 수 있다. 2019. 11. 기준 각국의 해당 조약 가입 여부는 아래와 같다.[55]

【중국, 베트남, 태국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2019. 11.)】

구분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베른협약	가입	가입	가입	가입
WIPO 조약	가입	가입	**미가입**	**미가입**
로마협약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다만 중국, 베트남, 태국은 모두 WTO 가입국으로 TRIPs 협정의 적용을 받고, TRIPs 협정 제9조는 당사국에 베른협약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부속서를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결국 해당국들은 원칙적으로는 TRIPs 협정 및 베른협약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베른협약 및 WIPO 조약은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제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베른협약 제5조 제2항,[56] WIPO 조약 제3조[57]), 구체

55) 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신탁관리단체(CMO) 현황, 중국·동남아 저작권 월간 동향(2019. 4.), 11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가이드 - 중국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china/china.do);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가이드 - 베트남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vietnam/vietnam.do);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가이드 - 태국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thailand/thailand.do).

56) Article 5 (1) Authors shall enjoy, in respect of works for which they are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in countries of the Union other than the country of origin, the rights which their respective laws do now or may hereafter grant to their nationals, as well as the rights specially granted by this Convention.

(2) The enjoyment and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formality; such enjoyment and such exercise shall be independent of the existence of protection in the

적 권리 보호 범위와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각국의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조약 가입국에 대하여 조약의 실체적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거나 이에 터잡아 조약 규정을 집행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국제조약의 경우, TRIPs 협정 및 베른협약에 따른 저작권 보호 수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모든 관련 규정에 대하여 그에 맞는 수준의 법률을 만들거나 그에 따른 집행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자간 조약의 특성상 직접 적용이 어렵고 조약의 유보 조항 등으로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다자간 조약에 비하여,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각국의 개별적 협상을 통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권리자 측의 보호 및 권리구제 측면에 보다 특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나, 역시 모든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그에 맞는 수준의 법률을 만들거나 그에 따른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콘텐츠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바, 정책 당국의 무성의 내지 부집행 등의 차원이 아닌, 법령의 미비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FTA 규정 중 (i) 당사국에게 구체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인터넷에서의 반복침해금지 등)의 경우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고, (ii) 규정 자체로 이미 권리 범위와 구제수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금 부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는 이를 적용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Consequently, apart from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extent of protection, as well as the means of redress afforded to the author to protect his rights, shall be governed exclusively by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57) **Article 3 (Application of Articles 2 to 6 of the Berne Convention)** Contracting Part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Articles 2 to 6 of the Berne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provided for in this Treaty.

(또는 하위 법률로 구체화) 및 집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 FTA 규정을 근거로 적용 및 집행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국가별로 FTA의 이행 및 적용 실질화를 촉구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저작권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지원 확대

가. 저작권 관련 단체의 현황

한국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저작권관리단체 등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관리제도[58]를 채택하여,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받은 단체는 아래와 같이 총 13곳이다.

- 음악 분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저작자(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의 권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음악저작자(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의 권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의 권리)
- 어문 분야
  - 한국방송작가협회(방송작가의 권리)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어문, 연극, 미술, 사진 저작자의 권리)

58) 문화관광부,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2004), 12면.

-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어문저작물의 복제권, 전송권)

■ 영상 분야

- ✔ 한국영화제작가협회(영상제작자의 권리)
- ✔ 한국영화배급협회(영상제작자의 권리)

■ 방송 분야

- ✔ 한국방송실연자협회(탤런트, 성우 등 방송실연자의 권리)

■ 뉴스 분야

- ✔ 한국언론진흥재단(뉴스저작자의 권리)

■ 공공 분야

- ✔ 한국정보문화원(공공저작물)

이 중 외국의 저작물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교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음악저작물 분야이므로, 해당 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국과의 교류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각 국가별 저작권료 징수 및 교류 현황

(1) 중국

1)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중국 저작

권법 제8조 제1항 및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7조 제3항).[59]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2년경부터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중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한국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징수한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보내줄 때 전체 사용료 징수 규모와 수수료 정산 내역, 관련 근거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저작물 목록만을 제공하고 있어 징수 사실 및 내역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해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한국 노래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 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큐시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중국에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저작권료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간헐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하나, 시간·비용 등의 현실적 한계로 이러한 조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한국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음반제작자협회 및 실연자단체)는 중국의 음반제작자협회 및 실연자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양 단체는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국의 실연자 단체와 유사한 신탁관리단체인 문화예술연합 등과 계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중 FTA를 통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체화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징수 및 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양 국간 상호관리계약 및 그에 따른 징수, 분배 업무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59) 손한기, 중국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고찰, 중국 저작권 월간 동향(2018. 8.), 2~4면.

(2) 베트남

1)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베트남의 음악저작권보호센터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베트남에서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제 베트남에서 한국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60] 다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산 근거 자료 등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고, 현지의 기획사(promoter)가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아 저작권자와 기획사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등,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2)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한국음반산업협회의 경우 베트남 몇 개 단체들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리곡 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며, 해당 단체들의 관리곡이 다른 신탁관리단체의 곡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기술적·현실적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보상금 징수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베트남 실연권단체(APPA) 설립을 지원하여 2017년말 실연권단체가 설립되었다. 당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제공하고 소정의 현물 지원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아직 상호관리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3) 태국

1)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태국음악저작권협회(MCT)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였

60) 정재우, 베트남 VCPMC의 음악 저작권 보호 활동(2010), 5~6면.

으며, 태국 내에서 한국 음악의 저작권료는 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태국음반산업협회를 대리하여 MPC Music Co., Ltd.가 징수하고 있다.[61] 태국에서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는 주로 공연사용료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징수 규모가 크지는 않고, 이 또한 정산 근거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

2)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태국은 음반산업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음악실연자를 위한 신탁관리단체는 설립되어 있지 않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태국음반산업협회와 상호관리계약 체결에 관해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체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4) 소결

이상과 같은 음악저작물과 관련한 각국의 신탁관리단체 설립 여부 및 해당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중국, 베트남, 태국의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 현황(2019. 11.)】

구분	중국		베트남		태국	
	신탁관리 단체 존재	상호관리 계약 체결	신탁관리 단체 존재	상호관리 계약 체결	신탁관리 단체 존재	상호관리 계약 체결
저작자협회	○	○	○	○	○	○
음반제작자협회	○	×	○	개별 계약	○	×
실연자협회	○	×	○	×	×	×

다. 각 국가별 교류 및 지원 확대 방안

각 국가의 교류 및 지원 확대 방안은 신탁관리단체의 설립 여부 및 해당 국가

61) 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신탁관리단체(CMO) 현황, 중국·동남아 저작권 월간 동향(2019. 4.), 11면.

의 신탁관리단체와 한국의 신탁관리단체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i) 해당 국가에 신탁관리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62]에는 저작권료 징수 관련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이미 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무진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징수 및 분배 프로그램 관련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ii) 해당 국가에 신탁관리단체가 설립되어 있으나 상호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63]에는, FTA 규정상 국내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수취 권한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베른협약상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 조항이 존재함을 근거로 하여 조속히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ii) 해당 국가에 신탁관리단체가 설립되어 있고 해당 단체와 한국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또한 체결되어 있는 경우[64]에는, 상호관리계약상 일방 신탁관리단체의 요청시 실제 징수 규모 및 수수료 공제 내역 등 정산 내역 및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음악 사용량 및 사용비율 등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음악저작물의 경우 중국, 베트남, 태국은 모두 국제표준음악작품번호(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 ISWC), 즉 음원 또는 악보로 출판되기 이전의 음악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표준 식별체계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역시 최근부터 해당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표준음악작품번호는 국제저작자·작곡자단체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62) 예컨대 태국의 음악저작물 실연자협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63) 예컨대 중국, 베트남의 음반제작자협회 및 음악저작물 실연자협회나 태국의 음반제작자협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64) 예컨대 중국, 베트남, 태국의 음악저작물 저작자협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of Authors and Composers, CISAC)에서 각 회원사에게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고유 코드로 중복 가능성이 없으므로, 해당 코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통합 관리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현행 저작권 수출 관련 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가. 해외 저작권센터를 통한 지원 제도

(1)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의 공통 지원 업무

해외 저작권센터에서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신고 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시정권고, 접속차단 의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및 수거 등 저작권 보호 업무와 이를 위한 조사·홍보,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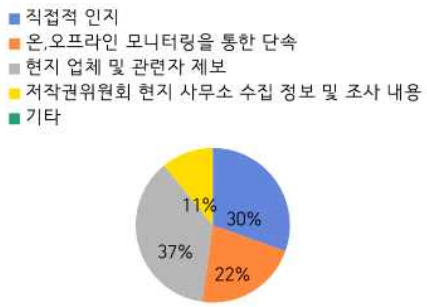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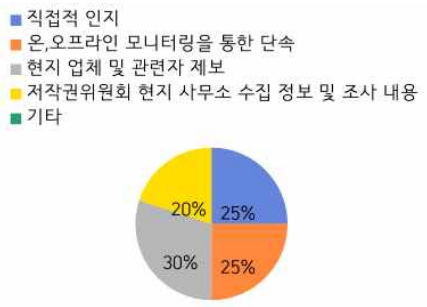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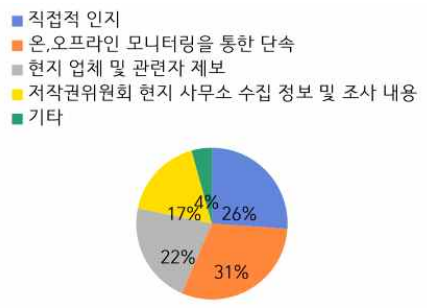
1) 현지 네트워크 업무

각 해외 저작권센터는 콘텐츠 관련 업체들을 위한 네트워크 자리를 마련하고, 저작권포럼이나 워크샵을 개최하거나, 저작권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국내 업체들과 현지 콘텐츠 업체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 저작권 법제 및 절차 관련 정보 제공

각 해외 저작권센터는 나라별 저작권 법제정보, 등록제도, 기관 정보 및 저작권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 업체들이 사전적으로 저작권 수출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수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업체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문제 발생 정보 습득 경위 관련 설문 결과】

항목	질의	응답
B3	귀하가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중국  • 베트남  • 태국 

3) 침해 대응 및 법률 상담, 지원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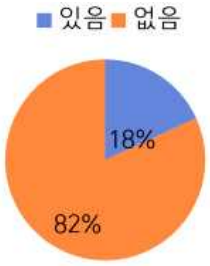
그 밖에 각 해외 저작권센터는 현지에서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업체에 대하여 법률 상담 및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북경사무소의 경우 2014. 3. 중국 내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상파 3사 방송제작사(KBS미디어,

iMBC, SBS콘텐츠허브)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단속에 공동 대응을 하는 등 침해 단속 조치를 하기도 하였다.[65]

(2) 중국에서의 지원 업무 - 저작권 인증 및 등록지원

한국은 중국에서의 한국저작권 보호 및 교역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저작권 관련 단체의 위탁을 받아 북경에서 대표기구를 설립하였고, 그에 따라 2006. 11. 15.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음악, 영화, 녹음녹화제품에 대한 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 허가·비준을 받았다.[66] 유통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중국 내에서 저작물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권리자증명서가 필요한 바, 권리자는 중국의 기관을 별도로 접촉할 필요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인증신청서 및 그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권리자 확인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통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지원 업무는 중국에서의 저작물 유통 및 권리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중국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실제로 북경 사무소의 인증 및 등록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중국에서의 지원 업무 관련 설문 결과】

항목	질의	응답
D17	귀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사무소를 통한 인증 및 등록 업무를 이용하거나 관련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65) 정성원·김희경,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에 따른 저작권 피해 분석 및 보호방안 연구(2015), 47면.

66) 위 보고서, 46면.

나. 기타 지원 제도

(1)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한 지원 제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반적으로 국내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하여 콘텐츠산업동향보고서를 제공하고, 현지 비즈니스 및 정책 파트너를 발굴하거나 비즈니스 매칭을 해주기 위한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며, 현지 주요 제작사나 배급사, 에이전시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바, 중국에서는 북경에 2011년, 심천에 2017년에 각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중국 현지 사무소에서는 '치코(Chi-Ko, China-Korea)' 멤버십 포럼을 개최하여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중국 내에 소재한 한국인 콘텐츠 사업자와 간담회 및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7. 11.에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시장에서 콘텐츠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조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조금 이행요건 완화, 지원 제도 신청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67]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9. 9. 베트남 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지 법제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태국에는 아직 현지 사무소가 없으나, 제반 콘텐츠 시장의 규모 및 전망을 예측하고 방송,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시장별 동향을 안내하는 등으로 콘텐츠 수출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한 지원 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일반적인 무역 투자 지원, 수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67)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17-5761호 및 제2017-5816호.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나, 여기에는 콘텐츠 수출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도 존재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지재권실에서는 8개국 15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며, 현지 침해 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또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콘텐츠 수출 업무에 있어서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우수 콘텐츠 제작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전문전시회, 사절단 등 기업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고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거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전시회 및 로드쇼 개최, 국내 콘텐츠기업 대상 제작투자 해외 파트너 발굴, 매칭을 통한 공동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3)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한 지원 제도

영화진흥위원회는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영화 분야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 제작 투자 등의 사전 단계에서는 국제공동제작 투자유치 및 인력·기술 분야의 해외진출 플랫폼을 마련하거나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을 통한 시장 맞춤형 프로젝트 개발 지원,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제작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68]

또한 완성작의 해외수출 관련 지원, 영화 인력 및 기술 분야의 수출, 해외 필름마켓 참가 지원, 신흥 전략 지역의 한국 영화 방영 지원 및 더빙 지원 등의 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침해 조사나 단속 등의 사후 대처보다는 주로 제작 투자 및 완성 콘텐츠의 해외 진출 단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68)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intr/introKofic_03.do.

다. 현행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 및 권리 구제 조치 비용 지원 확대

앞서 설문에 참여한 업체들 대다수가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취해야 할 가장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법률 지원 및 권리 구제 조치 비용 지원'과 '국가적 차원의 실무 협약,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 촉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위 지원 기관들을 통하여 사업을 위한 정보(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관련 예측)를 제공받는 경우는 상당수 있었으나, 실제 콘텐츠 수출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 보호를 받아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불법 유통 저작물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피해가 광범위하나, 이를 단속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권리 보호 및 침해 단속을 위해서는 개별 업체들이 앞서 열거한 기관들에 접촉하여 보다 쉽게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적절한 권리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보다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기술적 보호조치 등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시 확대

앞서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의 활용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이용자 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크 포렌식마크 기술'과 '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기술'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이라는 특성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 및 무력화 조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고, 근본적으로는 모니터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침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위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발·상용화를 비롯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은 개별적인 업체만의 관심이 아닌 수출 기업 모두에 대하여 공히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기술 개발 업체 내지 현지의 모니터링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 및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각 기관별 관련 업무 홍보 및 안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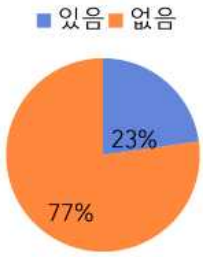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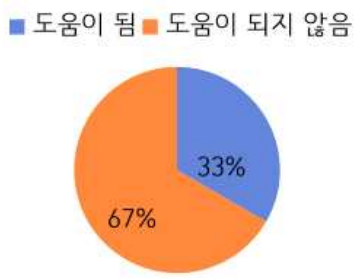
앞서 베트남 및 태국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자 보호 규정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저작권 등록 및 관련 지원 절차 이용 경험 관련 응답에서도, '이용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해외 사무소들이 상주하고 있고 이미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것보다 한 단계 구체화된 지원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베트남에서의 관련 홍보 및 안내 관련 설문 결과】

항목	질의	응답
D13	귀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를 통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D14	(위 13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도움이나 지원을 받은 업무는 무엇이었고, 해당 절차를 통한 업무 수행이나 협조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술형 응답) 사이트 폐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줌.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아 삭제 조치함.

【태국에서의 관련 홍보 및 안내 관련 설문 결과】

항목	질의	응답
D15	태국 현지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는 '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 또는 '일반저작물 상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D16	(위 15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이용한 서비스가 귀하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D17	(위 16항에서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해당 절차를 통한 업무 수행이나 협조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술형 응답) 해외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지원

제4장 정부의 저작권통상 현안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언

제1절 개관

우리나라의 저작물은 BTS를 선두로 한 K-POP 열풍, 영화 기생충의 각종 영화제 수상 및 해외 시장에서의 흥행 등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저작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국가의 사회·문화·경제 상황,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저작권 관련 법령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개별 저작권자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앞서서 문화 수출국의 지위에 있던 미국, EU도 동일한 고민을 하였고, 그 해결 방안 중 하나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 NTE 보고서, Notorious Market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고, EU는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EU의 보고서는 저작권 관련 이슈의 취합 및 분석, 콘텐츠 비즈니스 업계에 대한 교육, 외국과의 저작권 관련 통상협상에서의 활용 등의 목적에서 작성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무역 강대국의 위치에서 보고서를 기초로 특정 국가를 상대로 무역보복조치를 할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 수출국의 지위에서 미국, EU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인다. 그 목적은 마찬가지로 저작권 관련 이슈의 취합 및 분석, 콘텐츠 비즈니스 업계에 대한 교육, 외국과의 저작권 관련 통상협상에서의 활용 등이 될 것이다. 보고서와 무역보복조치는 별개이고, 우리나라 법률상 근거도 없을뿐더러, 통상마찰의 우려도 있으므로 무역보복조치를 보고서

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에 법령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정부기관이 자신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부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일 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권적 행정작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무역장벽보고서'의 경우에도 법령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무역법의 관련 조항과 같이 관련 법률에 정부기관의 보고서 작성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이 삽입된다면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예산 확보 등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원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통상 현안과 관련이 있는 법률, 예를 들어 문화기본법, 저작권법 등에 보고서 작성 및 발행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정부의 입법안 발의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절 보고서 작성 주체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NTE 보고서, Notorious Market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발표하고, EU 보고서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서 EU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므로 참고하기 어렵고, 미국의 예를 참고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 주체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미국의 예를 참고해야 할 필요는 없고, 더욱이 미국의 경우 무역보복조치라는 통상압박의 수단으로서 보고서가 작성되는 측면이 있어 무역대표부가 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를 담당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같은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의 예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까지 있다.

저작권 관련 이슈를 다루는 보고서인만큼 저작권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저작권 외에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염두에 둔다면 문화체육관광부 단독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하는 것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관련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고서 작성, 발행 및 활용의 여러 단계에서 다른 정부기관의 관여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자료 및 정보를 취합한다거나, 향후 FTA 협상 등에서 보고서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경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여하게 되므로 외교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보고서 작성주체가 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절 보고서 작성 대상

1. 대상 국가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베트남, 태국을 대상 국가로 정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 통상 현안의 분석 module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 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대상 국가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 베트남, 태국으로 정한 것은 해당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저작물의 유통 규모, 저작권 침해 상황, 관련 정보 및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위 세 개 국가 모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현지 사무소가 있음)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보고서의 대상 국가는 본 연구보다 당연히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대상 국가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작

성 주체가 보고서 시작 단계에서 대상 국가를 정하고, 이들 대상 국가 관련 저작권 이슈에 관하여서만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작성 주체가 원하는 국가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에 보고서의 역량이 집중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작성 주체가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데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점, 대상 국가를 선정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선정된 대상 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그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대상 국가를 미리 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일단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의견 취합을 한 다음 의견이 나온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다만, 의견이 나온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의 내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국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업계 등 실제 의견을 제시하는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국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의견 취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요 국가임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의견이 제시된 국가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보고서의 역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미국, EU의 경우 기본적으로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의견 수렴 시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견 제출 공지에 의견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를 나열하고 있기는 하다. EU의 경우 설문 중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국가'를 묻는 문항이 있고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나열하여 그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지막의 '기타(other)'에 나열되지 않은 국가명을 기재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국가의 제한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후자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취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요 국가임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그 국가의 예외적 추가, 의견 제시율 제고 등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견이 제시된 국가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보고서의 역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작성 주체가 의견의 내용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적절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대상 시장(market)

저작권 관련 문제들 중에는 국가 단위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시장 단위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온라인 시장은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형성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국가 단위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갖는 단위라고 볼 수도 있다. 시장 단위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나온다면 그 시장에 진입해 있는 또는 진입하고자 하는 경제 주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이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는 별도로 Notorious Market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된다.

대상 시장을 정하는 방식은 대상 국가를 정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작성 주체가 정하는 방식과 의견 취합 과정을 거쳐 정해지는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유사한 이유로 후자의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느 범위의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파악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고, 작성 주체가 알기도 어려운 것이므로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가 시장을 특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otorious Market 보고서의 의견 수렴 시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 시장 이름, 위치, 소유자, 운영자 등의 정보를, 온라인 시장의 경우 도메인 이름, 운영자, 호스팅 제공자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의견 제시자에게 시장의 특정을 맡기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한편 시장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할지 여부, 작성한다면 국가와 시장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할지, 아니면 국가 대상 보고서와 시장 대

상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할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서 도입을 검토하는 현 단계에서는 일단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대상 보고서의 작성 경험이 쌓인 후에 별도의 보고서로 시장 대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작성, 국가뿐 아니라 시장까지 대상으로 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작성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시장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를 Notorious Market 보고서라는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대상 권리 - 저작권, 그 외 지식재산권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저작권통상 현안의 분석 module을 정립하는 것이고 그 module의 실행 결과가 보고서이므로 저작권이 보고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저작권 관련 법령,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저작물의 유통 실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보고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판호 미발급의 이슈와 같이 저작물이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저작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도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슈를 다룰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의견 수렴 시에는 제한하지 않되 연구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거나, 의견이 있었다는 정도만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의견 수렴 시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가 저작권 관련 이슈와 저작물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저작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저작권과는 관련이 없지만 저작물이 대상인 이슈를 파악하여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고려요소는 보고서 작성에서도 동일하므로 보고서의 의견 수렴 시에도 의견 제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문 등 서면 의견 수렴 시 저작물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저작권과는 관련이 없는 이슈에 관한 답변을 이끌어 내는 구체적인 문항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청회 등 대면 의견 수렴 시 적절한 진행을 통해 위 이슈에 관한 논의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대상 분야

본 연구에서는 방송, 영화, 음악, 웹툰, 출판, 캐릭터, 게임의 7개 콘텐츠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저작권통상 현안의 분석 module 정립이라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수행의 용이성, 그리고 해외에서 유통되는 우리나라 저작물, 콘텐츠의 종류를 고려한 것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위 7개 콘텐츠 분야 외의 저작물, 콘텐츠에 대해서도 의견 취합 및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위 국가 및 시장에서 살펴본 바와 비슷한 이유로 의견 제출자가 저작물, 콘텐츠의 종류를 자유롭게 지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4절 보고서 작성 절차

1. 발행 주기

보고서의 발행 주기는 준비단계에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에 투입되는 노력 및 비용, 의견을 제시할 주체들의 예상 참여율, 보고서의 유의미한 업데이트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발행 주기는 크게 비정기적 발행과 정기적 발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비정기적 발행의 경우 보고서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관계로 보고서 발행의 간격이 지나치게 장기가 될 우려가 있는 점, 보고서 발행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점,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기적 발행이 바람직하다.

정기적 발행을 한다면 그 주기가 문제이다.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매

년 발행되고 있고, EU의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는 격년 발행이 원칙이나 그 간격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고서 준비단계에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최소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앞뒤로 작성 주체의 내부적인 제반 절차까지 고려하면 최소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금년도 보고서의 마무리 후 거의 곧바로 내년도 보고서의 준비에 들어가야 해서 작성 주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주체들이 잦은 의견 수렴에 피로감을 느껴 의견 제시를 덜하거나 형식적으로 할 우려가 있고, 전년도 보고서와 금년도 보고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고서의 발행 주기는 2년 내지 3년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2. 사전 준비 - 온라인 설문 양식의 작성

보고서 작성의 첫 단계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므로 작성 주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을 확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NTE 보고서, Notorious Market 보고서의 경우 누구에게나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자연인, 법인 등 각종 단체, 국가 등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별도의 양식을 제공하지는 않아 의견 제출자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나, 의견 제출 공지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은 제공된다.

EU의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 역시 자연인, 법인 등 각종 단체, 국가 등 누구에게나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한 설문 양식이 제공되므로 의견 제출자는 그 양식의 개별 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EU의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 설문 양식은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다.

미국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받는 반면 EU는 온라인 설문 양식으로 의견을 받는 것인데, 전자의 방식은 작성 주체가 설문 양식을 만드는 노력을 덜 수 있지만, 의견 제출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취합 및 분석이 어렵고, 통계를 내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의 방식은 작성 주체가 설문 양식을 만들어야 하고, 의견 제출자는 설문 양식에 없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설문 양식에 따라 답을 하게 되면 의견이 충실해지고, 의견 제출 형식이 통일되어 있어 취합 및 분석이 쉬우며, 통계를 내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의견 수렴을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이견 없이 설문 양식으로 의견을 받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콘텐츠 비즈니스 업계나 저작권 관련 협·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역량이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받게 되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을 취합하고 분석할 방법론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된 까닭이다. 본 연구의 설문 양식은 EU의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 설문 양식과 마찬가지로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작성 주체가 설문 양식을 마련하고 의견 제출자가 그 양식에 답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문 양식은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의견 제출자에게 워드 파일의 설문 양식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예상 의견 제출자가 미리 섭외한 몇십 개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미국, EU와 마찬가지로 자연인, 법인 등 각종 단체, 국가 등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나 의견을 제출하게 되므로, 참여율을 높이고, 취합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설문 양식의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보고서의 온라인 설문 양식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본 연구의 설문 양식, 설

문 양식 수정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작성 주체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연구 및 보완은 불가피하다. 대상 국가나 대상 저작물, 콘텐츠가 본 연구에 비하여 확대되기 때문에 그 국가, 저작물, 콘텐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설문은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온라인 설문 양식 작성 단계에서 콘텐츠 비즈니스 업계와 면담을 진행하고, Survey 전문가로부터 설문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설문 양식을 처음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한 번 만들어지면 일부 추가, 삭제, 보완 등의 개선 작업만 거쳐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가 지속하여 발행되는 가운데 온라인 설문 양식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 온라인 설문 양식 자체가 교육 및 정보제공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견 수렴 공지 및 의견 취합

온라인 설문 양식이 준비되면 작성 주체는 홈페이지, 전자관보 등을 통해 보고서 발행에 대하여 공지하고 온라인 설문 양식 링크를 제공하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홈페이지, 전자관보 등에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광범위한 의견 취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작성 주체가 기존에 확보하여 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지문과 온라인 설문 양식 링크를 담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NTE 보고서, Notorious Market 보고서의 경우 대략적으로 2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EU의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는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EU의 예를 참고하고, 정부 차원의 보고서가 처음 나오는 만큼 의견 제출자들이 의견을 고민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출된 의견을 공개할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모든 의견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의견 제출자가 겪거나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공개된다면 의견의 제출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다. 반면, 제출된 의견이 공개되어야 그 의견에 대해 추가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 교환 과정이 있어야 저작권 관련 이슈의 정확한 분석과 실효적인 해결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양자를 비교형량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보고서를 처음 도입하는 현 단계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 제출 자체를 꺼리게 되면 보고서 자체가 무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발행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 의견 제출자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가면서 제출된 의견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대면 의견 수렴 절차 - 공청회

온라인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 외에 업체 면담, 공청회 등 대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는 업체들로부터의 설문을 기초로 개별 업체별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애초 업체들로부터 설문을 취합하여 분석한 뒤 이를 기초로 동종 저작물, 콘텐츠를 다루는 1~3개 정도의 업체별로 심층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구 기간의 한계상 설문의 취합 기간이 짧았고, 업체들이 예상보다 늦게 설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 설문의 취합 및 분석 전에 심층 면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상 업체가 대략 40여 개에 이르다 보니 일정 조율이 어렵고 면담 시간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동종 저작물, 콘텐츠를 다루는 1~3개 정도의 업체별로 심층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려웠고, 결국 5~10개 정도의 업체가 참석하고, 저작물, 콘텐츠 분야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층 면담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심층 면담

은 설문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 그러므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서 드러난 문제는 완화하고, 심층 면담의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공청회가 열리고, 공청회 후 서면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된다. 공청회 참석의사 통지와 공청회 진술서는 앞서 살펴본 서면 의견 제출 기간 내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U의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공식적인 대면 의견 수렴 절차는 없으나 관련 업체 등과 수시로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본 연구에서 보다 훨씬 많은 주체가 의견을 제출할 텐데 그 의견 제출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같이 공청회를 여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의 경우 주제가 정해지지 않으면 각자의 입장을 성토하는 장이 될 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1차적으로 분석하여 공청회에서 다룰 소수의 주제를 선정한 다음 공청회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서면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공청회 참석 여부 및 공청회에서 진술할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보고서 작성 주체는 공청회 주제가 정해지면 홈페이지, 전자관보 등에 공청회 일정을 공지하고 그 일정으로부터 얼마 전 시점까지 온라인으로 공청회에서의 진술 요지를 포함하는 참석 신청서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전자관보 등에의 공지 외에도 작성 주체가 기존에 확보하여 둔 네트워크와 온라인 설문에 응한 의견 제출자들의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공청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지문과 온라인 참석 신청서 링크를 담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설문 기간이 종료된 후 15일 내에 공청회 주제를 선정하여 공지하고,

그 공지시점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온라인 참석 신청서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딘 후 15일 정도 후에 공청회를 진행하여 온라인 설문 기간 종료 후 약 2개월이 약간 넘는 정도 뒤에 공청회가 열리는 일정으로 진행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청회 후 7일 정도의 기간 동안 공청회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그 외의 의견 수렴 절차

온라인 설문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외에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가 있다.

미국은 NTE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국 미국대사관을 통해 해당 국가의 자료 및 정보를 취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주한 미국대사관의 지식재산권 담당자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예가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해당 국가의 자료 및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을 고려할 때,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요 국가의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등의 기관을 통해 저작권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취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이 소속된 기관과 보고서 작성주체 간의 업무 조율, 자료 및 정보 취합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의 확보, 자료 및 정보 취합의 구체적인 방식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보고서 작성 및 발행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 후속 연구와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법 제37조, 저작권법 제105조, 제108조에 근거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저작물 사용료·보상금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업무점검 과정에서 저작권신탁관리

단체로부터 저작권통상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면 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가운데는 온라인 설문에 응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의견 수렴이 중복될 수도 있으나 업무점검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의견제시가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 이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던 업무점검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첫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공청회 관련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보고서 작성 주체는 온라인 설문 내용, 공청회 내용 및 그 밖의 의견 수렴 내용을 기초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된다. 이들 의견 수렴 내용 외에도 문헌 조사 등을 통한 자료 역시 보고서 작성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NTE 보고서, Notorious Market 보고서, EU의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가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할 문헌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주요 국가의 관련 보고서,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관련 보고서, 민간 연구기관의 관련 보고서, 국내외 논문 등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상 문헌조사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는 어려우나 EU가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참조하는 문헌의 리스트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는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완성되면 작성주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발표하면 될 것이다.

제5절 보고서 내용

보고서의 내용을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와 같이 보고서의 목적, 배경, 범위, 작성방법 및 작성경과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통계를 포함한 온라인 설문의 분석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국가별 현황 및 저작권 관련 이슈의 분석 내용, 공청회 주제로 선정된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저작권 관련 이슈가 있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나 경제력 상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있어 적절하지 않다. 각 국가별 현황 및 저작권 관련 이슈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그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경제 주체를 교육하는 자료로서의 기능, 그 국가와의 통상협상 등에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절 보고서 활용 방안

보고서는 그 자체로 어떠한 사실적·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활용 방안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보고서는 그 존재가 널리 알려지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신뢰를 획득하며, 개인, 회사, 단체, 정부기관 등 여러 주체가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 많이 참고를 하면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보고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보고서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접근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번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어 등 주요 언어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번역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1. 설문지(중국)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 및 해결 방안 심층 조사

본 설문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법무법인(유) 세종이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배포되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만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답하여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A. 「콘텐츠 수출 개시 및 협상 단계」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또는 소속 회사, 이하 동일)가 해외 수출하는 콘텐츠의 분야는 어디입니까?
   □ 방송 □ 영화 □ 음악 □ 웹툰 □ 게임 □ 캐릭터 □ 출판

2. 귀하는 해외 수출하는 콘텐츠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였습니까?
   □ 자체적으로 창작
   □ 기존 콘텐츠의 구입 또는 이용 권리 취득
   □ 구입 또는 이용 권리 취득한 기존 콘텐츠를 기초로 창작

3. 귀하는 해외 수출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중 일부 권리(예를 들어 복제권, 공연권)
   □ 장소적 제한(예를 들어 수출 지역), 시간적 제한(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있는 저작재산권 중 일부 권리
   □ 수출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귀하는 콘텐츠에 대한 국내 수입 업무도 수행합니까?
   □ 수행함 □ 수행하지 않음

5. (위 4항에서 '수행함'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가 콘텐츠를 국내에 수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국내 판매
   □ 다른 업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이용 권리 부여
   □ 수입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기초로 하여 제작, 활용한 콘텐츠 수출
   □ 기타 _____

6. 귀하가 중국 외에도 콘텐츠를 수출하는 국가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 태국 □ 베트남 □ 기타 _____ □ 없음

7. 귀하는 콘텐츠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떠한 경로로 습득하고 있습니까?
   □ 업계 뉴스 기사
   □ 현지 업체와의 교류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 자료, 소식지
   □ 기타 _____

8. 귀하는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경로로 협상을 개시합니까?
   □ 현지 에이전시(중개업체) □ 유통 박람회 등 공공 마켓
   □ 온라인 유통 플랫폼 □ 기타 _____

9. 귀하는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 계약을 체결합니까?
   □ 현지 에이전시(중개업체) □ 현지 회사 설립
   □ 직접 계약 체결 □ 기타 _____

10. 귀하는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합니까?
   □ 라이선스 및 이용허락 계약 체결 □ 저작재산권 양수도 계약 체결
   □ 온라인 플랫폼 직접 유통 □ 기타 _____

11. 귀하의 콘텐츠 수출 관련 협상은 주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까?

□ 프리 프로덕션 단계(제작 전) □ 콘텐츠 제작 중 □ 콘텐츠 공표 이후

12. 귀하가 콘텐츠를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수출하지 못한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_____

13. 콘텐츠 수출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어떠한 문제였습니까?

_____

B. 위 12, 13항 관련,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이유」에 관한 설문입니다.

1.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유형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정부의 행정적 규제 측면

□ 판호 발급 관련 문제(발급 지연, 중단, 거부 등)
□ 저작권 인증, 저작권 등록 등 절차 문제(인증 및 등록 지연, 중단, 거부 등)
□ 현지 당국의 사전 검열 등 내용 통제
□ 기타 _____
□ 없음

(2) 저작물 유통 관련 측면

□ 온라인 불법 이용 및 유통(P2P, 웹하드, 토렌트, 스트리밍, 유튜브 등)
□ 라이선스 계약 범위 초과 문제(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제3자에 대한 불법 판매, 전송, 제3국에서의 서비스 행위)
□ 판권을 구매하지 않은 포맷 표절 내지 유사 콘텐츠 제작
□ 기타 _____
□ 없음

※ B. 1. (2)항에 대한 응답이 '없음'인 경우 ▶ C단계로 이동

※ B. 1. (2)항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아래 사항 추가 설문

2. 해당 문제가 발생한 일시, 내용, 경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3. 귀하가 해당 문제를 인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직접적 인지
   □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
   □ 현지 업체 및 관련자 제보
   □ 한국저작권위원회 현지 사무소 수집 정보 및 조사 내용 활용
   □ 기타

4. 해당 문제는 해당 국가의 제도와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 가능 □ 불가능 □ 모름

5. 해당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국가에 법률이 없음
   □ 해당 국가에 법률이 있으나 실제 단속, 집행되는 비율이 낮음
   □ 해당 국가에 법률이 있고 집행도 되나, 처벌 내지 제재 정도가 약함
   □ 기타 _____

C.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침해 국가 또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이용한 권리 구제를 시도한 일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었고 결과 및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권리 구제 조치	결과 및 경험한 어려움
□ 관련 업체에 대한 내용증명 등 문제 제기(우편, 전자 포함)	
□ 사이트에 대한 중단 요청	

(takedown notice)	
☐ 민사 가처분 신청, 소 제기 등 법적 조치	
☐ 형사 고소, 고발, 신고 등 법적 조치	
☐ 현지 당국에 대한 행정 단속 요청	
☐ 없음	

2. (위 1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권리 구제를 시도한 직접적인 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직접 시도
   ☐ 국내 법률사무소
   ☐ 현지 법률사무소
   ☐ 국내 법률사무소 및 현지 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외의 현지 대리인
   ☐ 기타 _____

3. (위 1항에서 '없음'으로 답한 경우) 권리 구제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현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 절차가 까다롭거나 관련 비용,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어서
   ☐ 승소 등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 승소 등 해결되더라도 실제 집행 등으로 배상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 현지와의 비즈니스 관계 등을 고려하여서
   ☐ 기타 _____

4. 귀하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 법률 지원 및 권리 구제 조치 비용 지원
   ☐ 현지 시장 조사 및 피해 규모 파악
   ☐ 국가적 차원의 실무 협약,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 촉구
   ☐ 현지 법제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미나 및 교육

□ 기타 _____

※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 유통을 돕기 위한 기술 서비스로 △불법복제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 △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기술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이용자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및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DRM 기술 등이 언급되거나 활용되고 있습니다.

5. 귀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기술적 보호조치	결과
□ 불법 복제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	
□ 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기술	
□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이용자 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	
□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및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DRM 기술	
□ 기타 _____	
□ 없음	

6. (위 5항에서 '없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어떠한 기술 서비스가 있는지 알지 못함
   □ 서비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음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거나 많지 않음
   □ 실효성이 없거나 크지 않음
   □ 기타 _____

7. 귀하는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콘텐츠 수출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그러함 □ 그렇지 않음

8. (위 7항에서 '그러함'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_____

9. 과거와 비교하여 중국에서 귀하의 콘텐츠 수출 빈도나 횟수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 수출 빈도·횟수가 늘어남
□ 수출 빈도·횟수가 줄어듦
□ 과거와 비슷함

10.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중국에서 콘텐츠 수출 시의 저작권 관련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개선되고 있음 □ 개선되고 있지 않음

11. (위 10항에서 답한 경우 공통) 귀하가 생각하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개선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2. 기타 콘텐츠 수출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고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D. 「중국의 저작권 법제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에 관한 설문입니다.

● 저작권 보호 인식 및 당국의 대처 관련

1. 귀하가 생각하기에 중국 현지 업계 관계자나 일반 대중들이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 인식 수준이 높음 □ 비슷함 □ 인식 수준이 낮음

2. 중국에서 외국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3. (위 2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차별의 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4. 현지 업체가 저작권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지 정부 또는 관계 부처에서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 행정 단속
   □ 형사 처벌
   □ 실제 행위자에 대한 위반 행위 중단 조치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위반 행위 중단 조치
   □ 기타_____
   □ 조치를 취하지 않음

5. 귀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기관에 대하여 들어보거나 해당 집행기관의 행정 조치 및 페널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 들어 보았고 사례를 본 적 있음
   □ 들어 보았으나 사례를 본 적 없음
   □ 들어 보지 못하였고 사례도 본 적 없음

6. (위 5항에서 '들어 보았고 사례를 본 적 있음', '들어 보았으나 사례를 본 적 없음'으로 답한 경우)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기관의 행정 조치 및 페널티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7. 귀하는 중국의 저작권 법제 및 보호 방안이 한국에서의 콘텐츠를 수출하기에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 적합하다고 생각함 □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8. (위 7항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그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관련**

9. 귀하는 '인터넷 등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치'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이러한 조치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중FTA 규정 제15.28조 인터넷 상 반복적 침해 방지 관련)
   □ 알고 있고 이용해 본 적 있음
   □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본 적 없음
   □ 알지 못하고 이용해 본 적 없음

10. 귀하가 특정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 제3자가 이를 무력화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 적이 있습니까? (한·중 FTA 규정 제15.8조의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 있음 □ 없음

11. (위 10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_____

12. 귀하가 이용계약이나 권리처리를 위하여 저작물에 부착, 부기하여 전송하는 '권리관리정보'가 콘텐츠 수출 이후 무단으로 삭제되거나 권한 없이 제거,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한·중 FTA 규정 제15.9조의 권리관리정보(어떤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고, 그 저작물의 이용계약이나 권리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의 보호 관련}
   □ 있음 □ 없음

13. (위 12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는 권리관리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제거·변경하여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전달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_____

● **중국의 저작권 인증, 등록, DCI 제도 및 그 협조 관련**

14. 귀하는 콘텐츠에 대한 사전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중국의 저작권 인증 제도, 저작권 등록 제도, DCI(Digital Contents Identifier)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활용한 제도:_____) □ 없음

15. (위 14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는 저작권 인증, 등록, 또는 DCI제도를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았습니까?
□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됨
□ 저작재산권 관련 권리 등록, 처리 등을 할 수 있게 됨
□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게 됨
□ 저작권 침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기타 _____

16. (위 14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는 위 14, 15항의 권리보호수단 활용 시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였습니까?
□ 현지 절차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이용이 어려움
□ 등록 및 인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외국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경험함
□ 기타 _____

17. 귀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사무소를 통한 인증 및 등록 업무를 이용하거나 관련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18. (위 17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해당 절차를 통한 업무 수행이나 협조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_____

19. 한·중 FTA의 저작권 추정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인증제도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저작권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 인지하고 있음 ☐ 인지하지 못하였음

E.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분야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 분야의 콘텐츠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분야]

1. 귀하는 '콘텐츠 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전적 권리 보호 수단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 방송 기획 제작 단계에서부터 방송 포맷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기획안, 제안서, 바이블 형태의 문서화
☐ 포맷인증보호협회에 포맷 등록
☐ 포맷 판매 계약 시 계약 종료 이후에도 표절을 금지하는 규정 삽입
☐ 방송 포맷을 영업비밀로 취급하겠다는 서약서 등 작성
☐ 기타 _____
☐ 없음

2. 방송사업자는 방송신호의 재방송, 방송의 고정,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이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가 있습니다(한·중 FTA 규정 제15.7조). 귀하는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함 ☐ 그렇지 않음

3. 귀하가 위 2항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영화 분야]

1. 귀하가 영화의 제작, 수출 및 유통과 관련하여 경험하거나 들은 문제는 무엇입

2. 니까? 해당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유형	구체적 내용
□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의 내용 심사	
□ 스크린쿼터제	
□ 영화상영허가증 및 디지털영화기술합격증	
□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인증 등 관련 문제	
□ 기타 _____	
□ 없음	

3. 귀하는 중국 정부에서 해외 영화의 수입 제한 비율 및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따라 중국 정부가 귀하가 수출하는 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방영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음악 분야]

1. 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절차로 개별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증, 등록 절차를 이행하였습니까? 이행하였다면 소요된 기간(일수)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_____

2. 중국에서의 음악 콘텐츠 유통은 일반적으로 원 저작물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또는 중국어로 번안된 저작물로 이루어집니까?
   □ 원 저작물 □ 중국어 번안 □ 둘 다

3. 중국어로 번안된 음악 저작물의 경우, 유통이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업계에서는 원 저작물과 번안 저작물을 매칭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_____

4. 귀하의 콘텐츠 유통에 따라 중국에서 음악 저작권료가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 적절히 징수되고 있음
   □ 징수되고는 있으나 완전하지 않음
   □ 징수되고 있지 않음

5. 귀하는 콘텐츠 유통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도움을 받고 있음□ 도움을 받지 못함

[게임 분야]

1. 귀하는 게임 프로그램 저작물의 해외 불법 복제, 전송을 통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모바일 앱스토어 및 관련 사이트에 대한 중단 요청(takedown notice)
   □ 법적 조치(민사 소 제기, 형사 고소, 고발, 신고 등)
   □ 기타 _____
   □ 하고 있지 않음

2. (위 1항에서 '하고 있지 않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3. 게임 프로그램 저작물의 해외 불법 복제, 전송을 통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프로그램 트래킹 또는 크롤링 등을 통한 업체 단속 시스템 구축
   □ 독립 마켓 차단 및 안드로이드, IOS 마켓 이용 강제 등 현지 규제를 통한 단속
   □ 개별 회사들의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 기타 _____

2. 설문지(베트남)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 및 해결 방안 심층 조사

본 설문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법무법인(유) 세종이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배포되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만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답하여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A. 「콘텐츠 수출 개시 및 협상 단계」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또는 소속 회사, 이하 동일)가 해외 수출하는 콘텐츠의 분야는 어디입니까?
   □ 방송 □ 영화 □ 음악 □ 웹툰 □ 게임 □ 캐릭터 □ 출판

2. 귀하는 해외 수출하는 콘텐츠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였습니까?
   □ 자체적으로 창작
   □ 기존 콘텐츠의 구입 또는 이용 권리 취득
   □ 구입 또는 이용 권리 취득한 기존 콘텐츠를 기초로 창작

3. 귀하는 해외 수출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중 일부 권리(예를 들어 복제권, 공연권)
   □ 장소적 제한(예를 들어 수출 지역), 시간적 제한(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있는 저작재산권 중 일부 권리
   □ 수출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귀하는 콘텐츠에 대한 국내 수입 업무도 수행합니까?

□ 수행함 □ 수행하지 않음

5. (위 4항에서 '수행함'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가 콘텐츠를 국내에 수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국내 판매
   □ 다른 업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이용 권리 부여
   □ 수입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기초로 하여 제작, 활용한 콘텐츠 수출
   □ 기타 _____

6. 귀하가 베트남 외에도 콘텐츠를 수출하는 국가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 중국 □ 태국 □ 기타 _____ □ 없음

7. 귀하는 콘텐츠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떠한 경로로 습득하고 있습니까?
   □ 업계 뉴스 기사
   □ 현지 업체와의 교류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 자료, 소식지
   □ 기타 _____

8. 귀하는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경로로 협상을 개시합니까?
   □ 현지 에이전시(중개업체) □ 유통 박람회 등 공공 마켓
   □ 온라인 유통 플랫폼 □ 기타 _____

9. 귀하는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 계약을 체결합니까?
   □ 현지 에이전시(중개업체) □ 현지 회사 설립
   □ 직접 계약 체결 □ 기타 _____

10. 귀하는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합니까?
   □ 라이선스 및 이용허락 계약 체결 □ 저작재산권 양수도 계약 체결
   □ 온라인 플랫폼 직접 유통 □ 기타 _____

11. 귀하의 콘텐츠 수출 관련 협상은 주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까?
   □ 프리 프로덕션 단계(제작 전) □ 콘텐츠 제작 중 □ 콘텐츠 공표 이후

12. 귀하가 콘텐츠를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수출하지 못한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_____

13. 콘텐츠 수출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어떠한 문제였습니까?

_____

B. 위 12, 13항 관련,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이유」에 관한 설문입니다.

1.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유형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정부의 행정적 규제 측면

□ 저작권 인증, 저작권 등록 등 절차 문제(인증 및 등록 지연, 중단, 거부 등)
□ 현지 당국의 사전 검열 등 내용 통제
□ 기타 _____
□ 없음

(2) 저작물 유통 관련 측면

□ 온라인 불법 이용 및 유통(P2P, 웹하드, 토렌트, 스트리밍, 유튜브 등)
□ 라이선스 계약 범위 초과 문제(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제3자에 대한 불법 판매, 전송, 제3국에서의 서비스 행위)
□ 판권을 구매하지 않은 포맷 표절 내지 유사 콘텐츠 제작
□ 기타 _____
□ 없음

※ B. 1. (2)항에 대한 응답이 '없음'인 경우 ▶ C단계로 이동
※ B. 1. (2)항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아래 사항 추가 설문

2. 해당 문제가 발생한 일시, 내용, 경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_____

_____

3. 귀하가 해당 문제를 인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직접적 인지
   □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
   □ 현지 업체 및 관련자 제보
   □ 한국저작권위원회 현지 사무소 수집 정보 및 조사 내용 활용
   □ 기타

4. 해당 문제는 해당 국가의 제도와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 가능 □ 불가능 □ 모름

5. 해당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국가에 법률이 없음
   □ 해당 국가에 법률이 있으나 실제 단속, 집행되는 비율이 낮음
   □ 해당 국가에 법률이 있고 집행도 되나, 처벌 내지 제재 정도가 약함
   □ 기타 _____

C.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침해 국가 또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이용한 권리 구제를 시도한 일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었고 결과 및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권리 구제 조치	결과 및 경험한 어려움
□ 관련 업체에 대한 내용증명 등 문제 제기(우편, 전자 포함)	
□ 사이트에 대한 중단 요청 (takedown notice)	
□ 민사 가처분 신청, 소 제기 등	

법적 조치	
□ 형사 고소, 고발, 신고 등 법적 조치	
□ 현지 당국에 대한 행정 단속 요청	
□ 없음	

2. (위 1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권리 구제를 시도한 직접적인 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직접 시도
   □ 국내 법률사무소
   □ 현지 법률사무소
   □ 국내 법률사무소 및 현지 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외의 현지 대리인
   □ 기타 _____

3. (위 1항에서 '없음'으로 답한 경우) 권리 구제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현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 절차가 까다롭거나 관련 비용,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어서
   □ 승소 등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 승소 등 해결되더라도 실제 집행 등으로 배상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 현지와의 비즈니스 관계 등을 고려하여서
   □ 기타 _____

4. 귀하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 법률 지원 및 권리 구제 조치 비용 지원
   □ 현지 시장 조사 및 피해 규모 파악
   □ 국가적 차원의 실무 협약,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 촉구
   □ 현지 법제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미나 및 교육
   □ 기타 _____

※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 유통을 돕기 위한 기술 서비스로 △불법복제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 △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기술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이용자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및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DRM 기술 등이 언급되거나 활용되고 있습니다.

5. 귀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기술적 보호조치	결과
□ 불법 복제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	
□ 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기술	
□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이용자 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크· 포렌식마크 기술	
□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및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DRM 기술	
□ 기타 _____	
□ 없음	

6. (위 5항에서 '없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어떠한 기술 서비스가 있는지 알지 못함
   □ 서비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음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거나 많지 않음
   □ 실효성이 없거나 크지 않음
   □ 기타 _____

7. 귀하는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의 콘텐츠 수출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그러함 □ 그렇지 않음

8. (위 7항에서 '그러함'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_____

9. 과거와 비교하여 베트남에서 귀하의 콘텐츠 수출 빈도나 횟수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 수출 빈도·횟수가 늘어남
   □ 수출 빈도·횟수가 줄어듦
   □ 과거와 비슷함

10.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베트남에서 콘텐츠 수출 시의 저작권 관련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개선되고 있음 □ 개선되고 있지 않음

11. (위 10항에서 답한 경우 공통) 귀하가 생각하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개선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2. 기타 콘텐츠 수출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고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D. 「베트남의 저작권 법제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가 생각하기에 베트남 현지 업계 관계자나 일반 대중들이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 인식 수준이 높음 □ 비슷함 □ 인식 수준이 낮음

2. 베트남에서 외국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3. (위 2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차별의 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4. 현지 업체가 저작권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지 정부 또는 관계 부처에서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 행정 단속
   □ 형사 처벌
   □ 실제 행위자에 대한 위반 행위 중단 조치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위반 행위 중단 조치
   □ 기타_____
   □ 조치를 취하지 않음

5. 귀하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집행기관에 대하여 들어보거나 해당 집행기관의 행정 조치 및 페널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 들어 보았고 사례를 본 적 있음
   □ 들어 보았으나 사례를 본 적 없음
   □ 들어 보지 못하였고 사례도 본 적 없음

6. (위 5항에서 '들어 보았고 사례를 본 적 있음', '들어 보았으나 사례를 본 적 없음'으로 답한 경우)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집행기관의 행정 조치 및 페널티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7. 귀하는 베트남의 저작권 법제 및 보호 방안이 한국에서의 콘텐츠를 수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 적합하다고 생각함 □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8. (위 7항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그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9. 귀하는 베트남에서 저작권 등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10. (위 9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한 이유 및 저작권 등록을 통해 얻은 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11. 베트남의 저작권법은 2018년에 저작권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식재산권법의 집행을 촉진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로 인한 귀하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그러함 □ 그렇지 않음 □ 모름

12. 베트남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따른 손해를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13. 귀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를 통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14. (위 13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도움이나 지원을 받은 업무는 무엇이었고, 해당 절차를 통한 업무 수행이나 협조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_____

15. 한·중 FTA의 저작권 추정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인증제도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저작권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 인지하고 있음 □ 인지하지 못하였음

E.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분야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 분야의 콘텐츠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영화 분야 공통]

1. 귀하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사이트에 의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2. 귀하는 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 가지고 있음 □가지고 있지 않음

3. (위 2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는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현지 업체를 통한 모니터링
   □ 관련자 제보
   □ 한국저작권위원회 현지 사무소 수집 정보 및 조사 내용 활용
   □ 기타 _____

4. 베트남 정부에서는 인터넷상의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2019. 3.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 통신사에게 침해 웹사이트 17개의 네트워크 접속 차단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정부 조치에 대하여 들어보았습니까?
   □ 들어 보았음 □ 들어 보지 못함

5. 위와 같은 정부의 조치 이후 귀하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개선됨 □ 개선되지 않음 □ 모름

[영화 분야]

1. 귀하가 영화의 제작, 수출 및 유통과 관련하여 경험하거나 들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당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유형	구체적 내용

□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의 내용 심사	
□ 스크린쿼터제 등 상영 제한	
□ 영화상영허가 등 행정 규제	
□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인증 등 관련 문제	
□ 기타 _____	
□ 없음	

2. 귀하는 베트남 정부에서 해외 영화의 수입 제한 비율 및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귀하가 수출하는 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방영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음악 분야]

1. 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절차로 개별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증, 등록 절차를 이행하였습니까? 이행하였다면 소요된 기간(일수)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_____

2. 베트남에서의 음악 콘텐츠 유통은 일반적으로 원 저작물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또는 베트남어로 번안된 저작물로 이루어집니까?
   □ 원 저작물 □ 베트남어 번안 □ 둘 다

3. 베트남어로 번안된 음악 저작물의 경우, 유통이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업계에서는 원 저작물과 번안 저작물을 매칭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_____

4. 귀하의 콘텐츠 유통에 따라 베트남에서 음악 저작권료가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 적절히 징수되고 있음
   □ 징수되고는 있으나 완전하지 않음
   □ 징수되고 있지 않음

5. 귀하는 콘텐츠 유통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도움을 받고 있음□ 도움을 받지 못함

6.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뿐 아니라 표절, 무허가 공연, 유투브 무단 업로드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에도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귀하는 VCPMC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저작권 보호 관련하여 VCPMC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존재를 알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
   □ 존재를 알고 있으나 도움은 받은 적이 없음
   □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도움을 받은 적이 없음

[게임 분야]

1. 귀하는 게임 프로그램 저작물의 해외 불법 복제, 전송을 통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모바일 앱스토어 및 관련 사이트에 대한 중단 요청(takedown notice)
   □ 법적 조치(민사 소 제기, 형사 고소, 고발, 신고 등)
   □ 기타 _____
   □ 하고 있지 않음

2. (위 1항에서 '하고 있지 않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3. 게임 프로그램 저작물의 해외 불법 복제, 전송을 통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프로그램 트래킹 또는 크롤링 등을 통한 업체 단속 시스템 구축

□ 독립 마켓 차단 및 안드로이드, IOS 마켓 이용 강제 등 현지 규제를 통한 단속
□ 개별 회사들의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 기타 _____

3. 설문지(태국)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 및 해결 방안 심층 조사

본 설문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법무법인(유) 세종이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배포되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만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답하여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A. 「콘텐츠 수출 개시 및 협상 단계」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또는 소속 회사, 이하 동일)가 해외 수출하는 콘텐츠의 분야는 어디입니까?
   □ 방송 □ 영화 □ 음악 □ 웹툰 □ 게임 □ 캐릭터 □ 출판

2. 귀하는 해외 수출하는 콘텐츠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였습니까?
   □ 자체적으로 창작
   □ 기존 콘텐츠의 구입 또는 이용 권리 취득
   □ 구입 또는 이용 권리 취득한 기존 콘텐츠를 기초로 창작

3. 귀하는 해외 수출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중 일부 권리(예를 들어 복제권, 공연권)
   □ 장소적 제한(예를 들어 수출 지역), 시간적 제한(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있는 저작재산권 중 일부 권리
   □ 수출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귀하는 콘텐츠에 대한 국내 수입 업무도 수행합니까?

□ 수행함 □ 수행하지 않음

5. (위 4항에서 '수행함'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가 콘텐츠를 국내에 수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국내 판매
   □ 다른 업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이용 권리 부여
   □ 수입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기초로 하여 제작, 활용한 콘텐츠 수출
   □ 기타 _____

6. 귀하가 태국 외에도 콘텐츠를 수출하는 국가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 중국 □ 베트남 □ 기타 _____ □ 없음

7. 귀하는 콘텐츠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떠한 경로로 습득하고 있습니까?
   □ 업계 뉴스 기사
   □ 현지 업체와의 교류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 자료, 소식지
   □ 기타 _____

8. 귀하는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경로로 협상을 개시합니까?
   □ 현지 에이전시(중개업체) □ 유통 박람회 등 공공 마켓
   □ 온라인 유통 플랫폼 □ 기타 _____

9. 귀하는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 계약을 체결합니까?
   □ 현지 에이전시(중개업체) □ 현지 회사 설립
   □ 직접 계약 체결 □ 기타 _____

10. 귀하는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합니까?
   □ 라이선스 및 이용허락 계약 체결 □ 저작재산권 양수도 계약 체결
   □ 온라인 플랫폼 직접 유통 □ 기타 _____

11. 귀하의 콘텐츠 수출 관련 협상은 주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까?
   □ 프리 프로덕션 단계(제작 전) □ 콘텐츠 제작 중 □ 콘텐츠 공표 이후

12. 귀하가 콘텐츠를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수출하지 못한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_____

13. 콘텐츠 수출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어떠한 문제였습니까?

_____

B. 위 12, 13항 관련,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이유」에 관한 설문입니다.

1.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유형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정부의 행정적 규제 측면

☐ 저작권 인증, 저작권 등록 등 절차 문제(인증 및 등록 지연, 중단, 거부 등)
☐ 현지 당국의 사전 검열 등 내용 통제
☐ 기타 _____
☐ 없음

(2) 저작물 유통 관련 측면

☐ 온라인 불법 이용 및 유통(P2P, 웹하드, 토렌트, 스트리밍, 유튜브 등)
☐ 라이선스 계약 범위 초과 문제(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제3자에 대한 불법 판매, 전송, 제3국에서의 서비스 행위)
☐ 판권을 구매하지 않은 포맷 표절 내지 유사 콘텐츠 제작
☐ 기타 _____
☐ 없음

※ B. 1. (2)항에 대한 응답이 '없음'인 경우 ▶ C단계로 이동
※ B. 1. (2)항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아래 사항 추가 설문

2. 해당 문제가 발생한 일시, 내용, 경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_____

_____

3. 귀하가 해당 문제를 인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직접적 인지
   □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
   □ 현지 업체 및 관련자 제보
   □ 한국저작권위원회 현지 사무소 수집 정보 및 조사 내용 활용
   □ 기타

4. 해당 문제는 해당 국가의 제도와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 가능 □ 불가능 □ 모름

5. 해당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국가에 법률이 없음
   □ 해당 국가에 법률이 있으나 실제 단속, 집행되는 비율이 낮음
   □ 해당 국가에 법률이 있고 집행도 되나, 처벌 내지 제재 정도가 약함
   □ 기타 _____

C.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침해 국가 또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이용한 권리 구제를 시도한 일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었고 결과 및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권리 구제 조치	결과 및 경험한 어려움
□ 관련 업체에 대한 내용증명 등 문제 제기(우편, 전자 포함)	
□ 사이트에 대한 중단 요청 (takedown notice)	
□ 민사 가처분 신청, 소 제기 등	

법적 조치	
□ 형사 고소, 고발, 신고 등 법적 조치	
□ 현지 당국에 대한 행정 단속 요청	
□ 없음	

2. (위 1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권리 구제를 시도한 직접적인 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직접 시도
   □ 국내 법률사무소
   □ 현지 법률사무소
   □ 국내 법률사무소 및 현지 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외의 현지 대리인
   □ 기타 _____

3. (위 1항에서 '없음'으로 답한 경우) 권리 구제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현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 절차가 까다롭거나 관련 비용,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어서
   □ 승소 등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 승소 등 해결되더라도 실제 집행 등으로 배상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 현지와의 비즈니스 관계 등을 고려하여서
   □ 기타 _____

4. 귀하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 법률 지원 및 권리 구제 조치 비용 지원
   □ 현지 시장 조사 및 피해 규모 파악
   □ 국가적 차원의 실무 협약,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 촉구
   □ 현지 법제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미나 및 교육
   □ 기타 _____

※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 유통을 돕기 위한 기술 서비스로 △불법복제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 △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기술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이용자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및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DRM 기술 등이 언급되거나 활용되고 있습니다.

5. 귀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기술적 보호조치	결과
□ 불법 복제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	
□ 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기술	
□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이용자 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크· 포렌식마크 기술	
□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및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DRM 기술	
□ 기타 _____	
□ 없음	

6. (위 5항에서 '없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어떠한 기술 서비스가 있는지 알지 못함
   □ 서비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음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거나 많지 않음
   □ 실효성이 없거나 크지 않음
   □ 기타 _____

7. 귀하는 태국에서 다른 나라의 콘텐츠 수출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그러함 □ 그렇지 않음

8. (위 7항에서 '그러함'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_____

9. 과거와 비교하여 태국에서 귀하의 콘텐츠 수출 빈도나 횟수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 수출 빈도·횟수가 늘어남
☐ 수출 빈도·횟수가 줄어듦
☐ 과거와 비슷함

10. 귀하는 과거와 비교하여 태국에서 콘텐츠 수출 시의 저작권 관련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개선되고 있음 ☐ 개선되고 있지 않음

11. (위 10항에서 답한 경우 공통) 귀하가 생각하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개선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2. 기타 콘텐츠 수출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고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D. 「태국의 저작권 법제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가 생각하기에 태국 현지 업계 관계자나 일반 대중들이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 인식 수준이 높음 ☐ 비슷함 ☐ 인식 수준이 낮음

2. 태국에서 외국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3. (위 2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차별의 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4. 현지 업체가 저작권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지 정부 또는 관계 부처에서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 행정 단속
   □ 형사 처벌
   □ 실제 행위자에 대한 위반 행위 중단 조치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위반 행위 중단 조치
   □ 기타_____
   □ 조치를 취하지 않음

5. 귀하는 태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기관에 대하여 들어보거나 해당 집행기관의 행정 조치 및 페널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 들어 보았고 사례를 본 적 있음
   □ 들어 보았으나 사례를 본 적 없음
   □ 들어 보지 못하였고 사례도 본 적 없음

6. (위 5항에서 '들어 보았고 사례를 본 적 있음', '들어 보았으나 사례를 본 적 없음'으로 답한 경우) 태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기관의 행정 조치 및 페널티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7. 귀하는 태국의 저작권 법제 및 보호 방안이 한국에서의 콘텐츠를 수출하기에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 적합하다고 생각함 □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8. (위 7항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그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9. 태국에서 2017년 발효된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었는데, 관련 위원회에서는 공공질서 혹은 지식재산권을 위반하는 컴퓨터 데이터를 전파하는 웹사이트를 차단(block)하는 법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2018년 동안 태국 정부가 차단하는 소셜미디어 포스트의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귀하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음 □ 모름

10. 귀하는 태국에서 귀하의 콘텐츠가 유통되던 도중 차단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11. 태국의 저작권법은 2015. 8.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로 인한 귀하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그러함 □ 그렇지 않음 □ 모름

12. 태국의 법원은 저작권 침해품을 압수하여 폐기하고 위반자에게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위반 범죄의 경우 위반자에게 3개월~2년의 징역형 혹은 한화 약 165만 원~1,3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적 제재 규정에 대하여 들어 보았거나 실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 규정을 들어 보았고 사례를 본 적 있음
   □ 규정을 들어 보았으나 사례는 본 적 없음
   □ 규정을 들어 보지 못하였고 사례도 본 적 없음

13.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는 태국 경찰과 협조하여 온라인 IP침해 대응을 위해 2018. 12. 18. 지식재산보호센터(COPTICS)를 개소하였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지식재산보호센터에 온라인 침해 관련 접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14. (위 13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의 온라인 침해 접수 이후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해당 조치가 귀하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_____

15. 태국 현지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는 '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 또는 '일반저작물 상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16. (위 15항에서 '있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이용한 서비스가 귀하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도움이 되었음 □ 도움이 되지 않았음

17. (위 16항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해당 절차를 통한 업무 수행이나 협조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_____

E.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분야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 분야의 콘텐츠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영화 분야 공통]

1. 귀하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사이트에 의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2. 귀하는 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 가지고 있음 □가지고 있지 않음

3. (위 2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는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현지 업체를 통한 모니터링

□ 관련자 제보
□ 한국저작권위원회 현지 사무소 수집 정보 및 조사 내용 활용
□ 기타 _____

4. 태국에서는 2015. 8. 4.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상 권리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워터마크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전제 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하여 들어보았습니까?
□ 들어 보았음 □ 들어 보지 못함

5. 위와 같은 태국의 저작권법 개정 이후 귀하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개선됨 □ 개선되지 않음 □ 모름

[영화 분야]

1. 귀하가 영화의 제작, 수출 및 유통과 관련하여 경험하거나 들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당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유형	구체적 내용
□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의 내용 심사	
□ 스크린쿼터제 등 상영 제한	
□ 영화상영허가 등 행정 규제	
□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인증 등 관련 문제	
□ 기타	
□ 없음	

2. 귀하는 태국의 영화 당국(Film Board)에서 해외 영화의 수입 제한 비율 및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따라 태국 정부가 귀하가 수출하는 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방영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음악 분야]

1. 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절차로 개별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증, 등록 절차를 이행하였습니까? 이행하였다면 소요된 기간(일수)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_____

2. 태국에서의 음악 콘텐츠 유통은 일반적으로 원 저작물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또는 태국어로 번안된 저작물로 이루어집니까?
   □ 원 저작물 □ 태국어 번안 □ 둘 다

3. 태국어로 번안된 음악 저작물의 경우, 유통이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업계에서는 원 저작물과 번안 저작물을 매칭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_____

4. 귀하의 콘텐츠 유통에 따라 태국에서 음악 저작권료가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 적절히 징수되고 있음
   □ 징수되고는 있으나 완전하지 않음
   □ 징수되고 있지 않음

5. 귀하는 콘텐츠 유통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도움을 받고 있음□ 도움을 받지 못함

[게임 분야]

1. 귀하는 게임 프로그램 저작물의 해외 불법 복제, 전송을 통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모바일 앱스토어 및 관련 사이트에 대한 중단 요청(takedown notice)
   □ 법적 조치(민사 소 제기, 형사 고소, 고발, 신고 등)

□ 기타 _____
□ 하고 있지 않음

2. (위 1항에서 '하고 있지 않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3. 게임 프로그램 저작물의 해외 불법 복제, 전송을 통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프로그램 트래킹 또는 크롤링 등을 통한 업체 단속 시스템 구축
□ 독립 마켓 차단 및 안드로이드, IOS 마켓 이용 강제 등 현지 규제를 통한 단속
□ 개별 회사들의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 기타 _____

4. 설문지 수정안[69]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 및 해결 방안 심층 조사

본 설문지는 [ ]이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배포되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만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답하여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A. 「응답자 확인 및 대상 국가」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의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름 또는 단체명 _____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_____

2. 귀하는 아래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 기업 □ 저작권관리단체
   □ 법무법인 □ 사용자/소비자단체 □ 대학
   □ 정부기관 □ 기타 _____

3. 귀하는 산업 분야 중 어디에 종사하는지 또는 관련이 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 □ □
   □ □ 기타 _____

69) 본 설문지 수정안은 완결된 형태의 설문지는 아니다. 수출 업체 외에 개인, 단체, 정부기관 등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답자가 대상 국가와 대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한 것이다. 설문지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각 국가, 각 콘텐츠 분야 별로 설문을 세분화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

4. 귀하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기타 _____

B. 「대상 국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설문입니다.

1. 대상 국가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 매우 만족한다.
   □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관련 의견 _____

2. 대상 국가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정도가 지난 [2]년 간 개선되었습니까?
   □ 매우 개선되었다.
   □ 개선되었다.
   □ 개선되지 않았다.
   □ 퇴보하였다.
   □ 매우 퇴보하였다.
   관련 의견 _____

3. 대상 국가는 자국 저작물과 외국 저작물을 차별한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모르겠다.
   관련 의견 _____

4. 대상 국가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_____
   _____

5. 대상 국가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_____

_____

6. 대상 국가는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정도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어야 할 국가입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관련 의견 _____

C. 「콘텐츠 수출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하는 대상 국가에 콘텐츠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위 1.항에서 '예'로 응답한 경우 아래 2~22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대상 국가에 수출하는 콘텐츠의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선택 가능).
   □ 방송 □ 영화 □ 음악 □ 웹툰 □ 게임 □ 캐릭터 □ 출판
   □ 기타 _____

3. 귀하는 대상 국가에 수출하는 콘텐츠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였습니까?
   □ 자체적으로 창작
   □ 기존 콘텐츠의 구입 또는 이용 권리 취득
   □ 구입 또는 이용 권리 취득한 기존 콘텐츠를 기초로 창작

4. 귀하는 대상 국가에 수출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중 일부 권리(예를 들어 복제권, 공연권)
   □ 장소적 제한(예를 들어 수출 지역) 또는 시간적 제한(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있는 저작재산권 중 일부 권리
   □ 수출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5. 귀하는 대상 국가로부터 국내로 콘텐츠를 수입하는 업무도 수행합니까?
   □ 수행함 □ 수행하지 않음

6. (위 5항에서 '수행함'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가 콘텐츠를 국내에 수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국내 판매
   □ 다른 업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이용 권리 부여
   □ 수입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기초로 하여 제작, 활용한 콘텐츠 수출
   □ 기타 _____

7. 귀하는 대상 국가에 대한 콘텐츠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습득하고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업계 뉴스 기사
   □ 현지 업체와의 교류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 자료, 소식지
   □ 기타 _____

8. 귀하는 대상 국가에 대한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경로로 협상을 개시합니까?
   □ 현지 에이전시(중개업체) □ 유통 박람회 등 공공 마켓
   □ 온라인 유통 플랫폼 □ 기타 _____

9. 귀하는 대상 국가에 대한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 현지 에이전시(중개업체) ☐ 현지 회사 설립
☐ 직접 계약 체결 ☐ 기타 _____

10. 귀하는 대상 국가에 대한 콘텐츠 수출 시 주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합니까?
☐ 라이선스 및 이용허락 계약 체결 ☐ 저작재산권 양수도 계약 체결
☐ 온라인 플랫폼 직접 유통 ☐ 기타 _____

11. 귀하의 대상 국가에 대한 콘텐츠 수출 관련 협상은 주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까?
☐ 프리 프로덕션 단계(제작 전) ☐ 콘텐츠 제작 중 ☐ 콘텐츠 공표 이후

12. 귀하가 대상 국가에 콘텐츠를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수출하지 못한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문제가 발생한 일시, 내용, 경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13. 대상 국가에 대한 콘텐츠 수출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어떠한 문제였습니까(문제가 발생한 일시, 내용, 경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14. (위 23항에 응답한 경우) 해당 문제는 대상 국가의 제도와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 해결 가능 ☐ 해결 어려움 ☐ 모름

15. (위 14항에 '해결 어려움'이라고 답한 경우) 해당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상 국가에 법률이 없음
☐ 대상 국가에 법률이 있으나 실제 단속, 집행되는 비율이 낮음
☐ 대상 국가에 법률이 있고 집행도 되나, 처벌 내지 제재 정도가 약함

□ 기타 _____

16. 귀하는 대상 국가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대상 국가 또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이용한 권리 구제를 시도한 일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었고 결과 및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권리 구제 조치	결과 및 경험한 어려움
□ 관련 업체에 대한 내용증명 등 문제 제기(우편, 전자 포함)	
□ 사이트에 대한 중단 요청 (takedown notice)	
□ 민사 가처분 신청, 소 제기 등 법적 조치	
□ 형사 고소, 고발, 신고 등 법적 조치	
□ 현지 당국에 대한 행정 단속 요청	
□ 없음	

17. (위 16항에서 '없음' 외의 보기에 답한 경우) 권리 구제를 시도한 직접적인 주체는 누구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 직접 시도
□ 국내 법률사무소
□ 현지 법률사무소
□ 국내 법률사무소 및 현지 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외의 현지 대리인
□ 기타 _____

18. (위 16항에서 '없음'으로 답한 경우) 권리 구제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현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 절차가 까다롭거나 관련 비용,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어서
□ 승소 등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 승소 등 해결되더라도 실제 집행 등으로 배상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 현지와의 비즈니스 관계 등을 고려하여서
□ 기타 _____

19. 귀하는 대상 국가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법률 지원 및 권리 구제 조치 비용 지원
□ 현지 시장 조사 및 피해 규모 파악
□ 국가적 차원의 실무 협약,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 촉구
□ 현지 법제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미나 및 교육
□ 기타 _____

※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 유통을 돕기 위한 기술 서비스로 △불법복제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 △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기술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이용자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및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DRM 기술 등이 언급되거나 활용되고 있습니다.

13. 귀하는 대상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기술적 보호조치	결과
□ 불법 복제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	
□ 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기술	
□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이용자 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크· 포렌식마크 기술	
□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및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DRM 기술	

☐ 기타 _____	
☐ 없음	

20. (위 20항에서 '없음'으로 답한 경우) 귀하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어떠한 기술 서비스가 있는지 알지 못함
    ☐ 서비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음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거나 많지 않음
    ☐ 실효성이 없거나 크지 않음
    ☐ 기타 _____

21. 대상 국가에서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를 기재하여 주십시오(예를 들어, 구체적인 금액, 매출의 일정 % 등).
    _____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문화관광부,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2004)

박경신, 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다, 저작권 동향(2019. 4.)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 한국은 2009년 이후 11년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2019)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상세 설명자료(2015)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상세 설명자료(2015)

설송이, 미국 무역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TA 통상 리포트 제18호(2018)

손경한 외 6인,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2015)

손한기, 중국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고찰, 중국 저작권 월간 동향(2018. 8.)

유현우, 미국 무역대표부 2017년도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 보고서(2017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 List) 발표, 저작권 동향(2018. 2.)

이유리나, 미국의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식재산 동향 심층분석보고서(2019. 8.)

정성원·김희경,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에 따른 저작권 피해 분석 및 보호방안 연구(2015)

정재우, 베트남 VCPMC의 음악 저작권 보호 활동(2010)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2019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발표(2019. 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2014. 1.)

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신탁관리단체(CMO) 현황, 중국·동남아 저작권 월간 동향(2019. 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2019)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2018년 결산 및 2019년 전망(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가이드 - 태국(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thailand/thailand.do)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가이드 - 베트남(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vietnam/vietnam.do)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가이드 - 중국(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china/china.do)

2. 외국 문헌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014)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_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2018)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2015)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2018)

Regulations.gov, Public Hearings: 2019 Special 301 Review(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USTR-2018-0037-0001)

Regulations.gov., 2018 Special 301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USTR-2018-0027-0001)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8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2019)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2019)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9 Special 301 Report(2019)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Releases Annual Special 301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Piracy and Counterfeiting(2019)

2019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현상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변호사 임 상 혁

참여연구원

변호사 송 재 섭

변호사 문 진 구

변호사 황 지 원

변호사 김 소 리

미국변호사 박 민 영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2019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현상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보고서

발 행 일 : 2019년 12월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3/5층

전화 : 055-792-0000(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opyright.or.kr/

인 쇄 : 타라그래픽스 (전화 : 02-2075-6900)

총 서 명 : 저작권정책연구

I S B N : 978-89-6120-444-6

I S B N : 978-89-6120-031-8 (세트)

※ 본 연구보고서는 나눔글꼴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비매품/무료
94010
9 788961 204446
ISBN 978-89-6120-444-6
ISBN 978-89-6120-031-8 (세트)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